
2024년 예산개요

2024. 1.



국민권익위원회

목 차

1. 세입예산 총괄표	1
1-1. 세입예산 사업설명서	
○ 과태료	2
○ 기타경상이전수입	3
○ 기타잡수입	4
2. 세출예산 총괄표	5
2-1. 세출예산 사업설명서	
○ 인건비(대상)	6
○ 기관운영기본경비(대상)	8
○ 기관운영기본경비(비대상)	10
○ 청렴권익정책알리기	12
○ 행정정보시스템운영(정보화)	14
○ 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(정보화)	16
○ 반부패기술지원(ODA)	18
○ 청렴권익국제교류	20
○ 청렴권익민간협력	23
○ 부패·고충제도개선	27
○ 종합상담창구운영	32
○ 고충민원조사활동	36
○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	39
○ 청렴교육및의식확산	44
○ 공직자행동강령운영	46
○ 부패신고자보호보상	50
○ 공익신고제도운영	53
○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	57
○ 청탁금지제도운영	61
○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	65
○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	69
○ 행정심판운영	72

1. 세입예산 총괄표

○ 세입예산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2 결산	2023예산 (A)	2024예산 (B)	증 감 (B-A)	
					%
합 계	1,179	823	892	69	8.4
【일반회계】	1,179	823	892	69	8.4

【일반회계】

(단위 : 백만원)

세입원 (관)	세입항 (항)	목	2022 결산	2023예산 (A)	2024예산 (B)	증 감 (B-A)	
							%
합 계			1,179	823	892	69	8.4
경상 이전 수입	기타이자 수입및재 산수입	기타재산 이자수입	0.2	-	-	-	-
	벌금, 몰수금 및 과태료	과태료	110	110	160	50	45.5
		과징금	0.2	-	-	-	-
	변상금 및 위약금	변상금	2	-	-	-	-
	기타경상 이전수입	기타경상 이전수입	1,058	663	682	19	2.9
재화및 용역판매 수입	잡수입	기타 잡수입	8	50	50	-	-

1-1. 세입예산 사업설명서

과태료
56 - 563

< 일반회계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확정(B)		
과태료	110	110	110	160	160	50	45.5

1. 법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6 (이행강제금)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1조의2(이행강제금)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(이행강제금)

2. 세입 개요

-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: 5,000만원
-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: 6,000만원
-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: 5,000만원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수납액	37	40	110	△62

기타경상이전수입
59 - 596

< 일반회계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확정(B)		
기타경상이전수입	1,058	663	663	682	682	19	2.9

1. 법적 근거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9조(보상금등의 환수 등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의2 (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)
-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6조(보조금의 지원)
-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15조(과오납금의 반환)

2. 세입 개요

-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방자치단체 상환액 : 9,400만원
-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상환 : 5억 5,800만원
-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: 1,000만원
- 과오납금 반환 등 : 2,000만원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수납액	281	378	1,058	874

기타잡수입
69 - 691

< 일반회계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본예산	확정(B)		
기타잡수입	8	50	50	50	50	-	-

1. 법적 근거

- 「공무원 인재개발법」 제16조(교육훈련기관의 운영)
-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비용 부담)

2. 세입 개요

- 청렴연수원 시설물사용료 등 : 5,000만원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수납액	5	1	8	25

2. 세출예산 총괄표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'23예산 (A)	'24예산 (B)	증감	
			(B-A)	%
총지출	94,958	111,592	16,634	17.5
□ 인건비	47,828	48,817	989	2.1
□ 기본경비	7,437	7,847	410	5.5
□ 주요사업비	39,693	54,928	15,235	38.4
○ 청렴권익문화확산	2,025	1,796	△229	△11.3
- 청렴권익정책알리기	2,025	1,796	△229	△11.3
○ 청렴권익행정정보화	11,213	25,791	14,578	130.0
- 행정정보시스템운영(정보화)	5,433	22,372	16,939	311.8
-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(정보화)	5,780	3,419	△2,361	△40.8
○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	1,214	1,144	△70	△5.8
- 반부패기술지원(ODA)	160	298	138	86.3
- 청렴권익국제교류	382	391	9	2.4
- 청렴권익민간협력	672	455	△217	△32.3
○ 부패·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	11,644	12,002	358	3.1
- 부패·고충제도개선	97	92	△5	△5.2
- 종합상담창구운영	11,547	11,910	363	3.1
○ 국민고충해소	1,331	1,324	△7	△0.5
- 고충민원조사활동	1,331	1,324	△7	△0.5
○ 반부패청렴정책강화	11,197	11,694	497	4.4
-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	2,644	3,066	422	16.0
- 청렴교육및의식확산	2,152	2,239	87	4.0
- 공직자행동강령운영	94	89	△5	△5.3
- 부패신고자보호보상	2,832	2,989	157	5.5
- 공익신고제도운영	1,923	1,741	△182	△9.5
-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	854	991	137	16.0
- 청탁금지제도운영	303	244	△59	△19.5
-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	281	226	△55	△19.6
-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	114	109	△5	△4.4
○ 행정심판	1,069	1,177	108	10.1
- 행정심판운영	1,069	1,177	108	10.1

2-1. 세출예산 사업설명서

사 업 명
인건비(대상)(1101 - 1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운영지원과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01	100
명칭	국민권익증진	인건비	인건비(대상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	
인건비(대상)	45,008	47,828	47,828	48,817	48,817	989	2.1

4. 사업목적

-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 :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공무원보수규정」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」
- 추진경위 :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부터 소속공무원 및 기타직공무원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48,817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기타직 공무원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「공무원보수규정」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따라 집행

사 업 명
기관운영기본경비(대상)(1111 - 2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운영지원과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11	200
명칭	국민권익증진	기본경비	기관운영기본경비(대상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기관운영 기본경비(대상)	2,796	3,064	3,064	3,160	3,160	96	3.1

4. 사업목적

-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 :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추진경위 :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'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편성·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3,160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위원회 소속 직원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,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고금관리법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의 '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' 등에 의거하여 적법·타당하게 집행

사 업 명
기관운영기본경비(비대상)(1111 - 25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운영지원과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11	250
명칭	국민권익증진	기본경비	기관운영기본경비(비대상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기관운영 기본경비(비대상)	4,231	4,373	4,373	4,687	4,687	314	7.2

4. 사업목적

-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집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 : 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- 추진경위 :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로써 '08년 위원회 출범 이후 예산 편성·집행지침에 따라 연간소요액을 반영하여 계속 시행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4,687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위원회 소속 직원 등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-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,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고금관리법」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기획재정부의 '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' 등에 의거하여 적법·타당하게 집행

사 업 명
청렴권익정책알리기(1131 - 30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대변인	-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1	300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문화확산	청렴권익정책알리기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권익정책알리기	1,913	2,025	2,025	1,796	1,796	△229	△11.3

4. 사업목적

- 위원회의 청렴·권익구제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 추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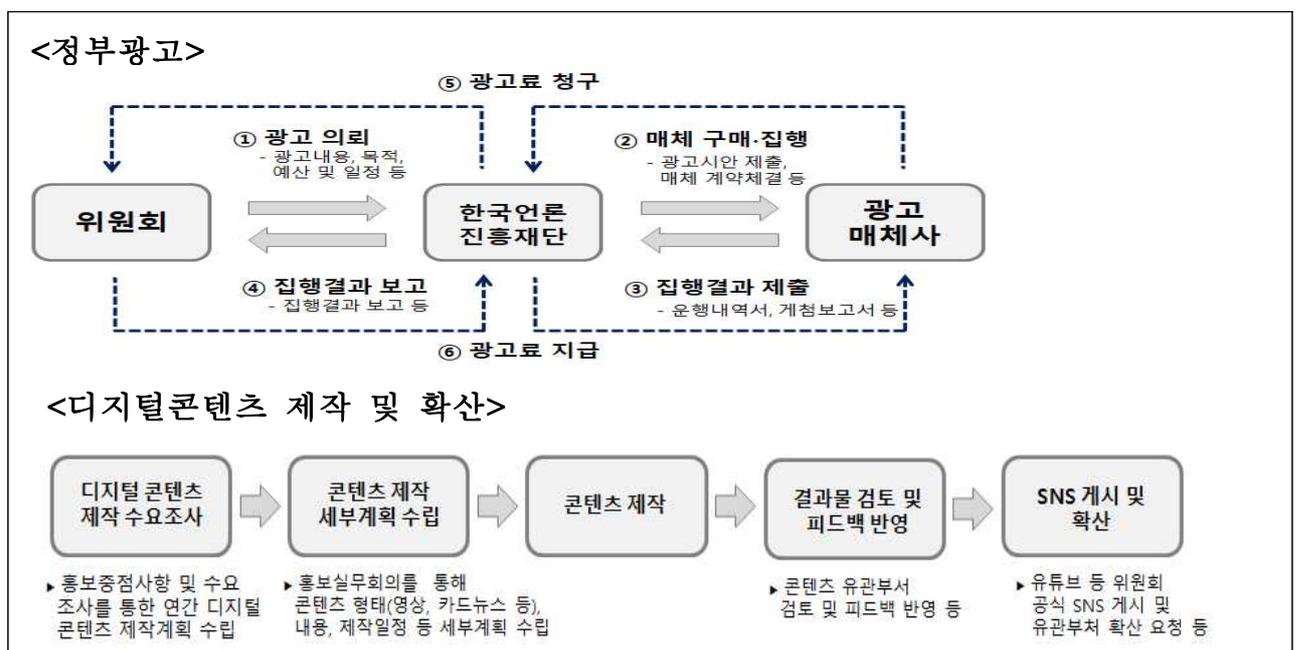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81조

- 추진경위
 - 2008. 2월 국민권익위원회 출범
 - 보도자료 배포·인터뷰·기고 실시 및 기획홍보, 이동신문고·현장조정 현장 취재
 - 효과적인 위원회 정책소개와 이용 유도를 위해 TV·라디오·신문·온라인·뉴미디어 광고 실시
 - 정책 소개를 위한 계간 「국민권익」 소식지 발간(2008. 3월~)
 - 국민·정책수요자의 직접 참여 및 공감형 소통을 위해 「국민권익」 블로그 개설 운영
 -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기사 작성을 위해 정책기자단 청백리포터 선발·운영
 -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라 국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해 기관 SNS(트위터, 페이스북, 유튜브) 등 운영
 - 영상콘텐츠를 통한 국민소통 확대를 위해 유튜브 방송채널 「권익비전」 개국(2019. 9월)
 - 디지털소통팀(2020. 6월 구성)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확산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,796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업명
행정정보시스템운영(정보화)(1132 - 32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기획조정실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0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행정정보화	행정정보시스템운영(정보화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	
행정정보시스템 운영	5,584	5,433	5,433	22,372	22,372	16,939	311.8

4. 사업목적

- 대내·외 정보통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정보시스템* 구축·운영, 정보자원의 안정적인 운영·관리 및 사이버 보안 강화

* 부패방지·행정심판 등 업무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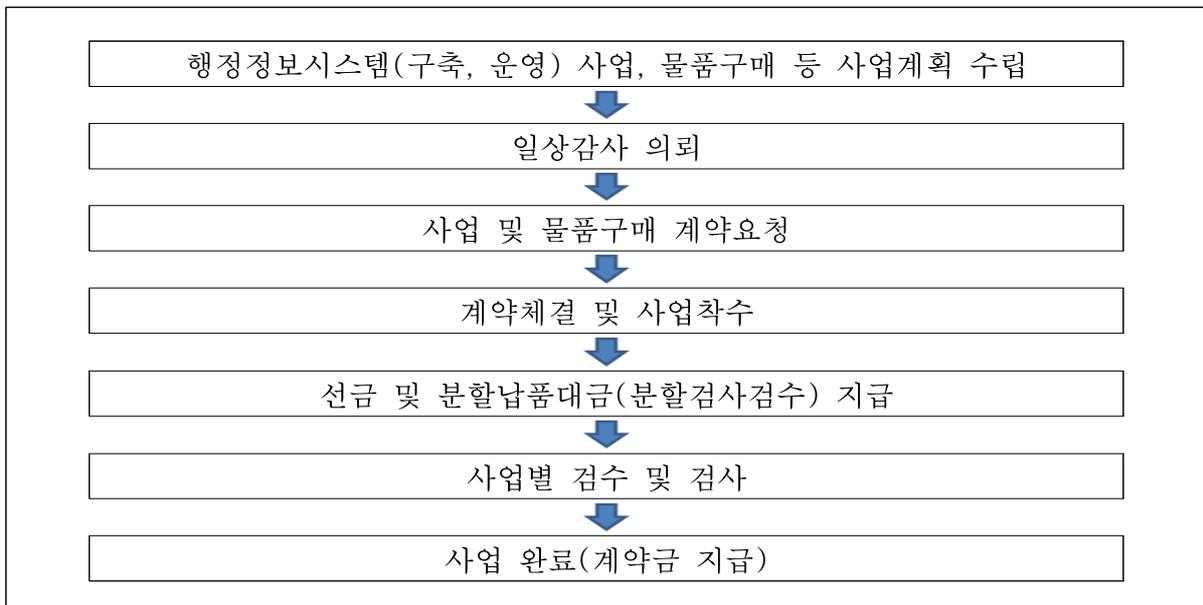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 - 「행정심판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추진경위
- 국민권익위원회 개청에 따른 권익행정 정보시스템 구성 및 운영('08.8.)
 -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시스템 구축('12.12.)
 -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('13.~'16., 전자정부지원사업)
 - 사이버 안전센터 구축 및 주간 관제 시행으로 정보보안 강화('17.2.~)
 - 청탁금지법 업무처리시스템 구축 및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개통('17.7.)
 - 주간에만 시행하던 사이버 보안관제를 야간·주말까지 확대('19.7. ~)
 - 범정부 부패방지정보시스템(청렴포털) 구축('18.~'21. 전자정부지원사업)
 -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통('22.5.)
 - 전라북도소청심사위 등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확대·운영('23.12월 기준 총 85개 행심위)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 사업
- 사업규모 : 22,372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, 위원회 내부직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업명
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(정보화)(1132 - 32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권익개선정책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2	321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행정정보화	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(정보화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국민소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	3,026	5,780	5,780	3,419	3,419	△2,361	△40.8

4. 사업목적

- 모든 행정기관(중앙·지자체·교육청)과 주요 공공기관의 민원, 제안, 토론 및 각종 신고 등 소통창구를 통합·연계한 범정부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‘국민신문고’ 운영 및 기능개선
- 수집된 민원정보 등 국민의 소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민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‘민원정보분석시스템’ 운영 및 데이터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·직접분석 활용 체계 확대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기능)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
 - 「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
- 추진경위 - 사업 시작연도, 추진배경, 부처별 중점과제, 대통령 공약사항 등
 -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('03.8.)
 -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시범시스템 구축사업('05.7.)
 -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시스템 확대 1, 2, 3단계 구축사업('06.6.~'08.2.)
 -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「국민신문고」 기능개선 및 이용 확대('08.6.~)
 - 국민신문고 외국어(영·중·일 등 14개 외국어) 민원창구 개설('08.6.~'13.10.)
 - 국민참여 플랫폼 「국민생각함」 개통('16.3.)
 -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구축('10.~'12.11.) 및 이용기관 확대('13.1.~)
 - 민원빅데이터 현황판 구축('18.7~'12), '한눈에 보는 민원빅데이터' 개시('19.1.)
 - 국민신문고 및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전면 개편('18.8.~'19.12.)
 -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('22.6.~'12.)
 -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구축('23.8.~'24.3., 디지털플랫폼정부 선도과제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3,419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, 중앙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 행정기관

7. 사업 집행절차

추진절차	시행주체	절차내용
① 구축·운영사업 계획 수립	국민권익위	· 구축·운영사업 계획 수립
↓		
② 일상감사	국민권익위	·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등 검토
↓		
③ 계약요청	국민권익위	· 조달청에 사업 입찰공고 및 계약을 의뢰
↓		
④ 사업공고 및 계약체결	조달청	· 사전규격공고, 사업공고 및 기술평가, 계약체결 등
↓		
⑤ 사업수행	국민권익위	· 사업 착수 및 과업내용 이행
↓		
⑥ 검사 및 잔금지급	국민권익위	· 과업내용 검사 실시, 계약금 지급
↓		
⑦ 사업완료	국민권익위	· 사업완료

사 업 명
반부패기술지원(ODA)(1133 - 33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청렴연수원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1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	반부패기술지원(ODA)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반부패기술지원 (ODA)	162	160	160	298	298	138	86.3

4. 사업목적

-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·제도적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과정 등 운영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9호(기능) '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' 수행
 - UN반부패 협약 제6장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- 제60조 '훈련과 기술지원', 제62조 '그 밖의 조치 : 경제발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협약 이행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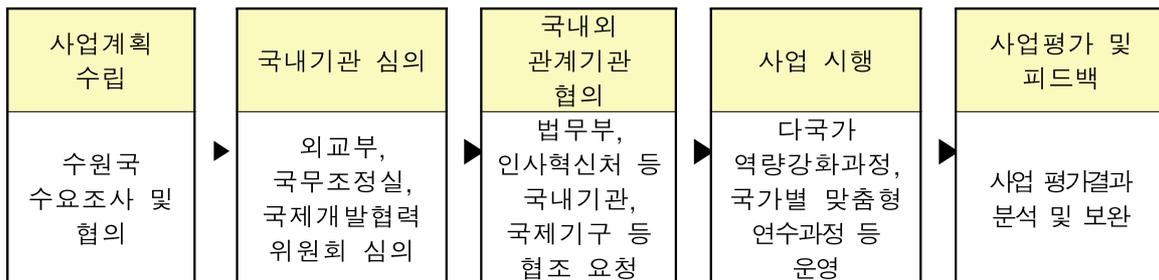
○ 추진경위

- '08. 3월 : UN반부패협약 비준(한국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 지정)
 ※ UN반부패협약은 타방 당사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명시
- '10. 2월 : 한-베트남, 한-몽골 반부패 협력 MOU 체결
- '11. 2월 : 국민권익위-KOICA 간 기술지원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
- '13. 6월 : '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' 개설
- '15. 12월 : 한-UNDP(유엔개발계획) 반부패 협력 MOU 체결
- '23. 9월 : 한-우즈베키스탄, 한-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98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청렴연수원(국민권익위원회 소속)
- 사업 수혜자 : 외국인 공직자 등

7. 사업 집행절차



※ 관련 법령 및 지침 : 국가개발협력기본법(2010),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2021~2025)

사 업 명
청렴권익국제교류(1133 - 33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기획조정실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2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	청렴권익국제교류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	
청렴권익국제교류	263	382	382	391	391	9	2.4

4. 사업목적

- (국제회의 참석) 국제 반부패 규범 형성 및 이행관리 등 국제 반부패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, 국제 반부패 공조에 적극 참여
- (해외 유관기관 교류·협력) 반부패·음부즈만 제도의 발전적 방향 모색 등 국제 반부패·음부즈만 기구 및 해외 반부패·음부즈만 기관과 교류·협력
- (통·번역비, 행사경비 등 기타) 우리나라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홍보 및 해외자료 수집 통한 선진 반부패 정책 분석 등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9호(기능) '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' 수행
- OECD 뇌물방지협약('99.2월 국회 비준)
- UN 반부패협약('08.2월 국회 비준)
-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(IACA) 설립을 위한 협정('11.11월 대통령 재가)
- 반부패·옴부즈만 협력 MOU

○ 추진경위

- 반부패 국제교류

- 아·태 지역 내 APEC 반부패·투명성 T/F 설립('05.9.)
- 한-인니 반부패 협력 MOU 체결('06.12.)
- UN반부패 협약 비준('08.3.) ※ 한국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 지정
- APEC 반부패 투명성 심포지엄 및 제5차 아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(ACA) 개최('09.9.)
- 한-베트남, 몽골 반부패 협력 MOU 체결('10.2.)
- G20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('10.11., 서울 정상회의)
- 위원회-국제반부패아카데미(IACA) MOU 체결('12.3.)
- 국제반부패아카데미(IACA) 초대이사 당선('12.11.)
- 제7차 아·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(ACA) 및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('13.9.)
- 한-영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('14.4., 영국 외무부 번영기금 활용)
- 제7차 아·태 반부패 기관장 회의(ACA) 및 국제 반부패 포럼 개최('13.9.)
- 한-영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('14.4., 영국 외무부 번영기금 활용)
- 위원회-유엔개발계획(UNDP) MOU 체결('15.12.)
- ADB/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개최('17.11.)
- 한-튀니지('18.3.), 이라크('18.4.), 미얀마('18.5.) 반부패 협력 MOU 체결
-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4주기 점검 현장실사('18.7., 서울/세종)
- 국제반부패아카데미(IACA) 이사 당선('18.9.)
- G20 실무그룹회의 공공기관 반부패시책 장려정책 우수사례집 발간('18.10.)
- 한-국제투명성기구(TI) 국제반부패회의 개최 MOU 체결('19.5.)
- 한-쿠웨이트('19.5.), 우즈베크('19.10.) 반부패 협력 MOU 체결
-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(IACC) 개최('20.12.)
- 위원회-유엔개발계획(UNDP) MOU 연장 체결('21.12.)
- UN반부패협약 2주기 점검 방문 실사('22.10.)
- UN반부패협약 2주기 점검 요약보고서 발간('23.5)
- G20 제2차 반부패 각료 회의 개최('23.8.)
- 한-우즈베크, 인도네시아 반부패 협력 MOU 체결('23.9.)

- 옴부즈만 국제교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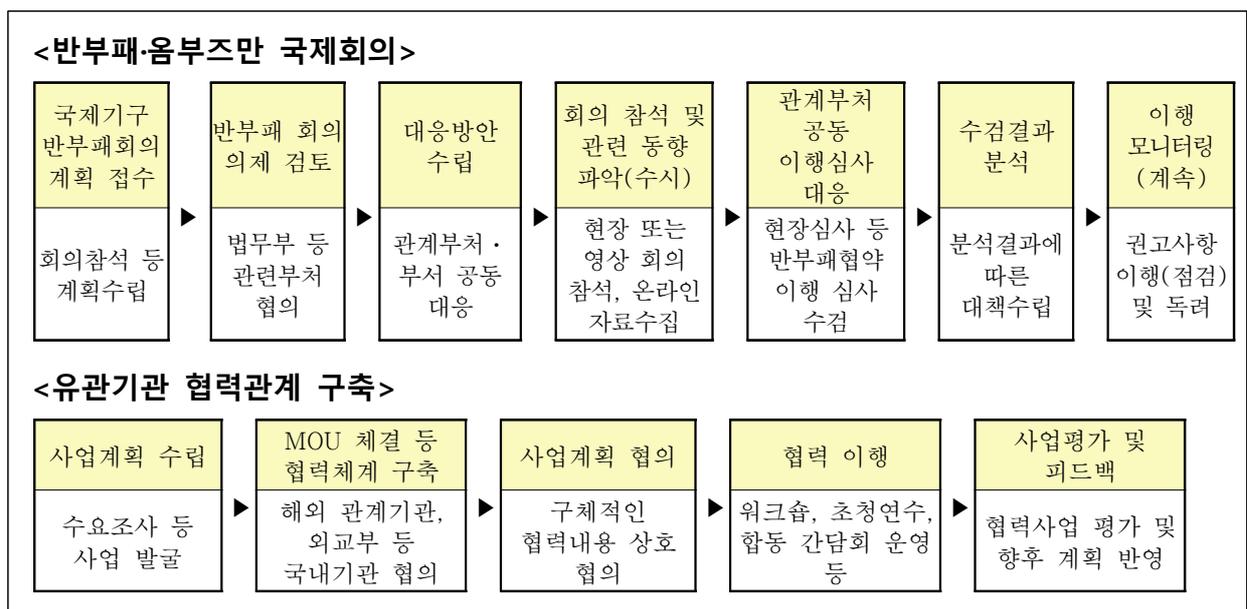
-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아시아지역 부회장 당선('09.6.)
- 한-인도네시아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('10.2.)

- 한-태국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('11.12.)
- 한-베트남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 및 이행('13.3.)
- 아시아옴부즈만협회(AOA) 이사회 및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아시아지역총회 등 개최('14.7.)
- 한-호주 옴부즈만 MOU 체결 및 이행('15.6.)
-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아시아 이사국 당선('16.11.)
- 아시아옴부즈만협회(AOA) 총회·컨퍼런스 및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아시아 지역총회 개최('17.5.)
- 한-호주NSW주 옴부즈만 협력 MOU 체결('18.11.)
- 아시아옴부즈만협회(AOA) 이사 당선('19.12.)
- 세계옴부즈만협회(IOI) 지역이사 당선('21.5.)
- 아시아옴부즈만협회(AOA) 바쿠 국제컨퍼런스 영상 발표('22.10.)
- 아시아옴부즈만협회(AOA) 바쿠 국제컨퍼런스 영상 발표('22.10.)
- 아시아옴부즈만협회(AOA) 이사 당선('23.9.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 사업
- 사업규모 : 391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 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재외국민, 해외 주재 기업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청렴권익민간협력(1133 - 33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기획조정실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3	333
명칭	국민권익증진	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	청렴권익민간협력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○		90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권익민간협력	588	672	672	455	455	△217	△32.3

4. 사업목적

- 민간단체 등과의 간담회,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·협력 활성화, 공공기관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지원, 청렴정책 모니터링, 민간경상보조사업 등
-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조성·정착 지원을 위한 「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」 발간·배포,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등 협력
- 공기업 등이 청렴윤리경영을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'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(청렴윤리경영 CP)' 마련 및 배포 등을 추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공공기관의 책무), 제5조(기업의 의무), 제6조(국민의 의무), 제12조(기능) 8호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(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)
- 「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」 제3조(기본방향)

○ 추진경위

- 시민협력

• 민간보조사업(공모) 추진('07년~)

※ '07년(10개 사업, 120백만원) → '08년(9개 사업, 120백만원) → '09년(5개 사업, 120백만원) → '10년(4개 사업, 120백만원) → '11년(6개 사업, 90백만원) → '12, '13년(23개 사업, 341백만원) → '14년(21개 사업, 305백만원) → '15년(16개 사업, 244백만원) → '16년(13개 사업, 209백만원) → '17년(10개 사업, 188백만원) → '18년(8개 사업, 169백만원) → '19년(9개 사업, 199백만원) → '20년(12개 사업, 189백만원) → '21년(11개 사업, 189백만원) → '22년(9개 사업, 189백만원) → '23년(8개 사업, 189백만원)

• 민간단체 토론회 및 심포지엄, 실무협의, 간담회 등 개최('07년~)

•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지원('10년~)

•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'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' 구축·운영('14년~)

※ 장애인, 다문화가정, 아동·청소년, 여성, 안전·소비자, 사회복지 등 6개 분야 19개 단체

• 청렴정책에 대한 국민모니터링 실시('19년~)

-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

•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정보제공 월간지 「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」 제작·배포('05년~)

• 기업 윤리경영 관련 전문자료 발간·보급('07년~)

※ ('07년) 기업 윤리경영 모델 → ('08년) 기업 투명성 자가진단 모델 → ('09년) 윤리경영 보고서 표준안 → ('10년) 기업 윤리경영 모델 → ('12년) 산업별 기업 윤리경영 모델 → ('16년) 기업윤리경영 체계 수립 가이드선 → ('17년) 부패방지경영시스템(ISO37001) 가이드북 → ('17년) 부패방지경영시스템(ISO37001) 가이드북 → ('19년, '20년)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·실패 사례집

-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

• 국제투명성기구 '22년 국가청렴도(CPI) 발표('23.1.)

※ 우리나라 국가청렴도는 31위로 역대 최고성적을 기록했으나, 경영활동 관련 부문은 5년간 답보상태(5년간 '경영활동 관련 부패(IHS Markit)' 59점, '공적자금 유용·계약 등 뇌물관행(EIU)' 55점)

• 공공기관 CP개발 TF팀운영('21년 3월), 가이드라인 개발·배포('22.6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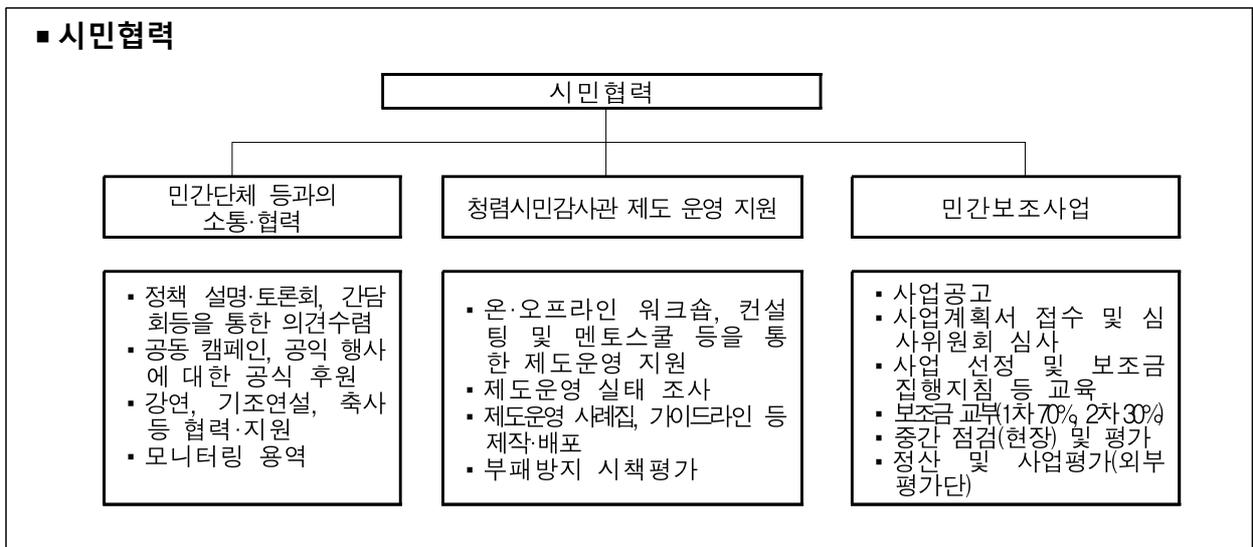
- 제도 도입 방향을 위한 정책간담회('21.3.~'22.5., 7회), 공개토론회('21.12.)
- 6개 공기업 업무협약('21.8.~) 및 제도 개발·시범 도입 협업 추진
- 한전, 도로공사 등 20개 시범기관 운영(1차('21.8.~)/2차('22.8.~))
- 청렴윤리경영 정책자문단('22.6.~) 및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운영('22.11.~)
-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('23.6.)
- 민간기업용 투명윤리경영 CP 안내서 초안 마련('23.9.)

6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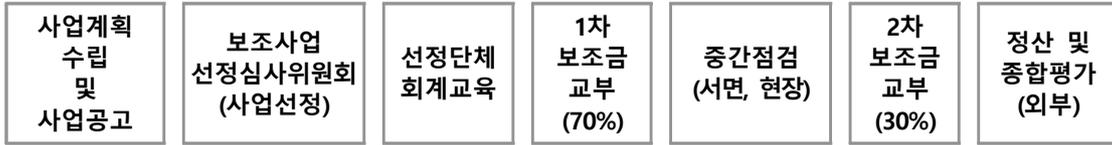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사업
- 사업규모 : 455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, 민간경상보조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, 시민사회단체, 기업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· 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3예산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반부패·권익 증진확산프로 그램 공모	보조	비영리 민간단체	189	90	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8호 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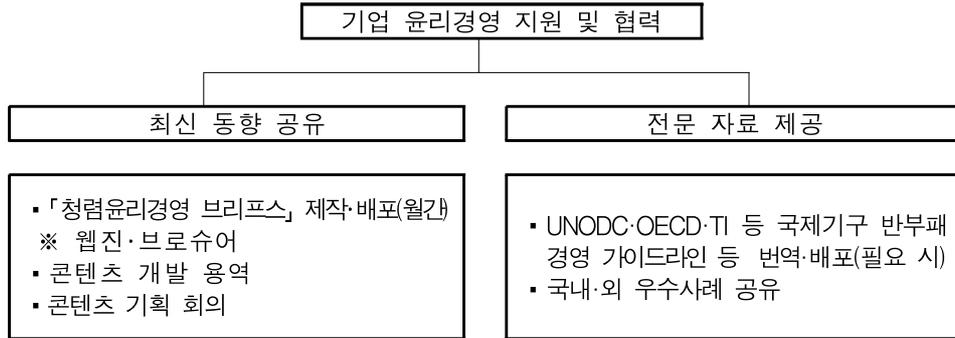
7. 사업 집행절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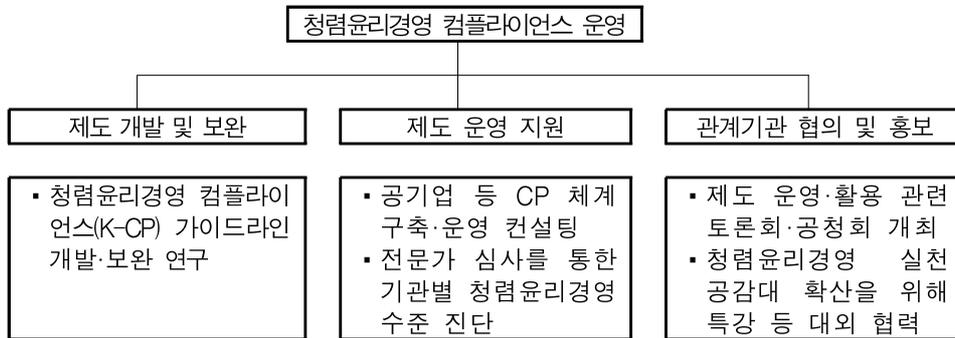
■ 시민협력-민간보조사업



■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



■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



사업명
부패고충제도개선(1134 - 34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권익개선정책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4	340
명칭	국민권익증진	부패·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	부패고충제도개선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부패·고충 제도개선	91	97	97	92	92	△5	△5.2

4. 사업목적

○ 사업목적·내용

- (권익개선 의견수렴) 동 내역사업은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·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·제도, 구조적·고질적인 부패취약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,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권고함으로써 권익침해·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임
- (실태조사 및 이행점검) 동 내역사업은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과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·점검 등을 통해 이행력 제고 및 권고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임

- (적극·소극행정 운영) 동 내역사업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운영을 통해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, 소극행정 재신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극행정을 예방·근절하는 것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, 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, 제52조(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

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.

제47조(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)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·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

제52조(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-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2(적극행정국민신청), 제18조의3(소극행정 신고), 제20조(소극행정 예방 지원)

※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도 동일하게 개정(21.7.27)

제18조의2(적극행정국민신청) 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(이하 “적극행정국민신청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1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[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)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]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

2. 「국민 제안 규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

② 적극행정국민신청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을 통해 해야 한다.

-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.
-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제5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제시 요청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.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.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국민신청의 방법·절차·처리기준, 처리결과 통보, 사후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.

제18조의3(소극행정 신고) ①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,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,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의 운영과 신고사항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다.

제20조(소극행정 예방 지원) ① 인사혁신처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취한 조치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극행정의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해 자문이나 상담, 교육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
○ 추진경위

<부패방지 제도개선>

- 부패방지 제도개선은 「부패방지법」 시행('02.1.25.)에 따라 '02년부터 추진
- 부패방지 현안보고(대통령, '03.11.3.)
 - 부패척결을 위한 포괄적인 개선책과 함께 정확한 실태진단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·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추진 필요(대통령 강조사항)
-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('03.11.18.)
 - 1차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('03.11.24.~'04.2.17.)
 - 1차 실태조사결과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(대통령, '04.2.18.)
- 부패취약분야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('02년~현재)

〈고충예방 제도개선〉

- 고충예방 제도개선은 「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(‘05.10.30.)에 따라 ‘05년부터 추진
- 제도개선 총괄부서(고충위 제도개선팀) 신설(‘05.9월)
-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(‘05년~현재)
- 직제개편(‘09.5.13.)에 따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소속 제도개선기획담당관·제도개선담당관 2개 부서로 소속·명칭 변경 및 제도개선업무 통합
-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 제도개선 사업통합을 위한 직제개편(‘10.2.9.)에 따라 ‘제도개선 사업’으로 변경, 사무처장 직속 권익제도기획관(총괄·경제·사회제도개선담당관, 3개과)에서 사업 수행
- 직제개편(‘13.3.23.)에 따라 권익제도기획관이 기획조정실 내 민원분석심의관과 통합하여 권익개선정책국이 신설, 권익개선정책국 내 총괄·경제·사회제도개선과로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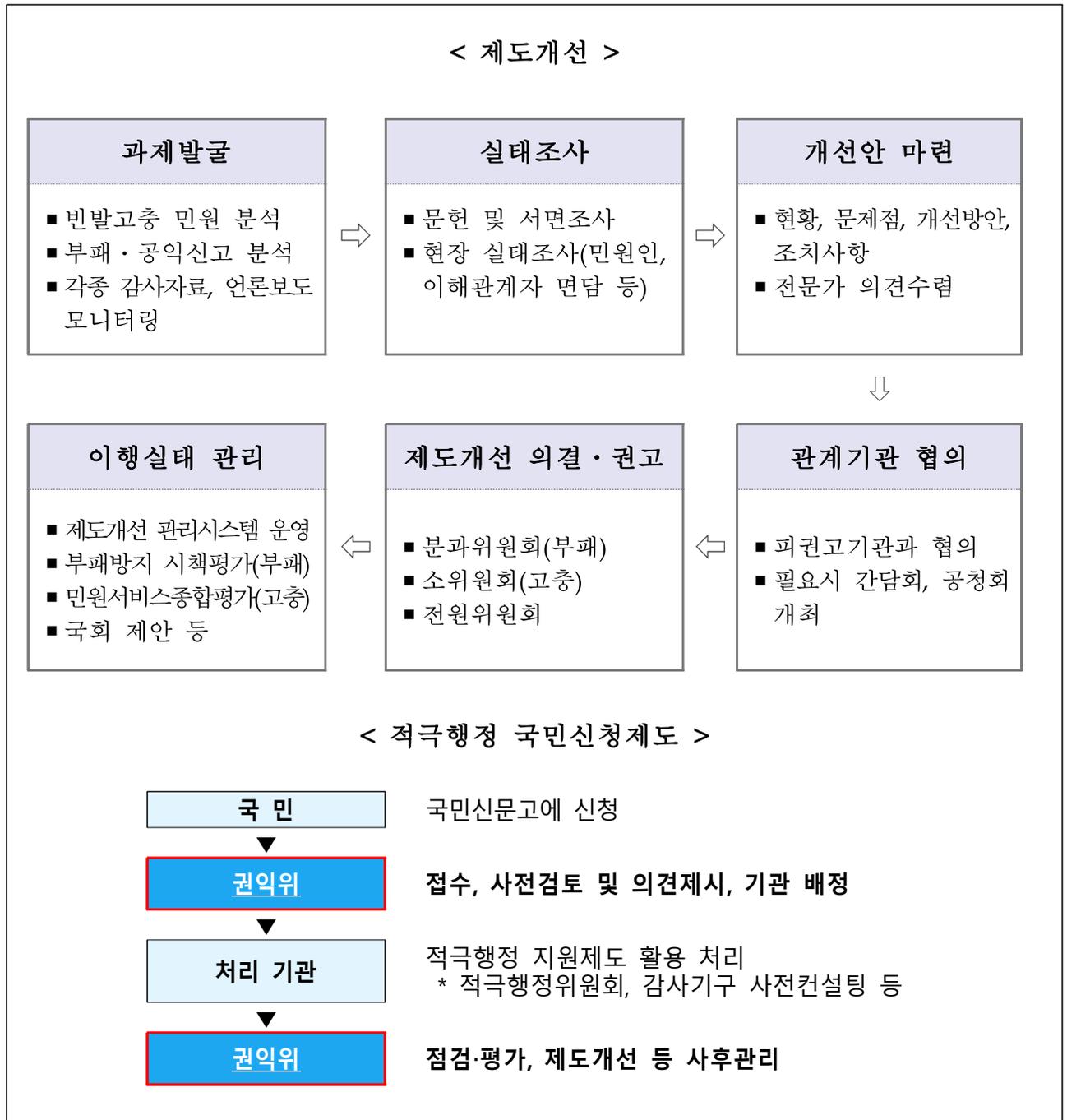
〈적극·소극행정 운영〉

- ‘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(21.2, 국무회의) : 적극행정 추진(적극행정 신청제 도입 등), 소극행정 예방·책임 관리를 위한 권익위 역할 대두
-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개정·시행(‘21.7.27) :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, 소극행정 예방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 마련
-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창구 개설(‘19.3) 및 적극행정 국민신청 창구 개설(‘21.7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92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종합상담창구운영(1134 - 34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정부합동민원센터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4	341
명칭	국민권익증진	부패·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	종합상담창구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(A)	추경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종합상담창구운영	10,548	11,547	11,547	11,910	11,910	363	3.1

4. 사업목적

- 국민들이 각종 행정 및 생활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고충민원 및 국민제안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
- 국민이 단일 전화번호(☎110)로 정부민원을 상담·안내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구축한 정부대표콜센터의 효과적 운영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제12조(기능) 15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·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·지도
- 제12조(기능) 16.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·운영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 - 제11조(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및 24조(전문상담위원의 위촉)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(민원실)
- 「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용규정」(국민권익위원회 훈령) 제6조(실비보상)

○ 추진경위

< 국민콜110(정부민원안내) 운영 >

- 제1콜센터 개소(전국서비스 개시) : '07. 5. 10.
- 전화상담 대행(ASP) : 행안부·통계청·국세청('07), 여가부('11), 법무부('12)
- 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개시 : 경찰청('09), 식약처·보훈처('10)
- 110 온라인(화상·채팅·SNS) 상담서비스 개시 : '11. 11.
- 110 공공행정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개시 : '12. 6.
- 수도권 소재 11개 정부콜센터 과천청사 통합·이전 : '13. 8.
- 정부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추진 확정(국가정책조정회의) : '14. 3.
- 정부콜센터 대표번호 110 단일화 출범 기념식(4개 기관 110번 통합상담) : '14. 8.
 - * 4개 기관 : 해수부, 농식품부, 교육부, 권익위
- '110정부민원콜센터 앱' 업그레이드 및 모바일서비스 개시 : '14. 12.
- 안전관련 신고전화의 119·112·110 통합방안 확정(안전정책조정회의) : '15. 1.
- 5개 기관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: '15. 6.
 - * 5개 기관 : 인사혁신처, 행안부, 보훈처, 식약처, 통계청
- 4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 연계 상담개시 : '15. 12.
 - * 4개 기관 : 과기부, 외교부, 국토부, 기상청
- 비긴급 신고전화 처리를 위한 제2콜센터 개소 및 시범운영 개시 : '16. 7. 1.
- 비긴급 신고전화 상담콜센터(제2콜센터) 개소 및 정식서비스 개시 : '16.10.28.
- 3개 기관 콜센터 대표번호 110번 연계 상담개시 : '16. 12.
 - * 3개 기관 : 법무부, 복지부, 관세청
- 경찰(112), 소방(119), 권익위(110) 간 신고전화 연계체계 구축 : '17. 10.
 - * 전화 및 신고(상담)내용 실시간 전달·공유체계 구축
- 공정위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: '18. 1.
- 비긴급 기관의 시스템 통합 및 콜센터 연계체계 구축 : '18. 2.
 - * 통합(1개) : 여가부(1366), 연계(2개) : 경찰청(182) 및 한국전력공사(123)

- 공정위 종합상담실, 상담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 : '18. 3.
- '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'(예규) 시행 : '18. 10.
 - * 특정 민원인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 교체, 폭언·성희롱에 대한 고소·고발 등
- 114에 공공기관의 대표번호 문의시 110으로 안내 시행 : '18. 10.
 - * 문체부·농진청 관련 상담은 110에서 우선 실시
- 정부민원안내콜센터(1·2콜센터) 통합 운영위탁 용역계약 체결 : '19. 4.
- 카카오톡 '국민콜110' 일반 및 갑질피해 채팅상담 개시 : '19. 7.
- 제2콜센터(영등포)의 과천청사로 통합이전 추진 : '19. 10.
- 문체부 대표번호 110번 단일화 상담개시 : '19. 11.

<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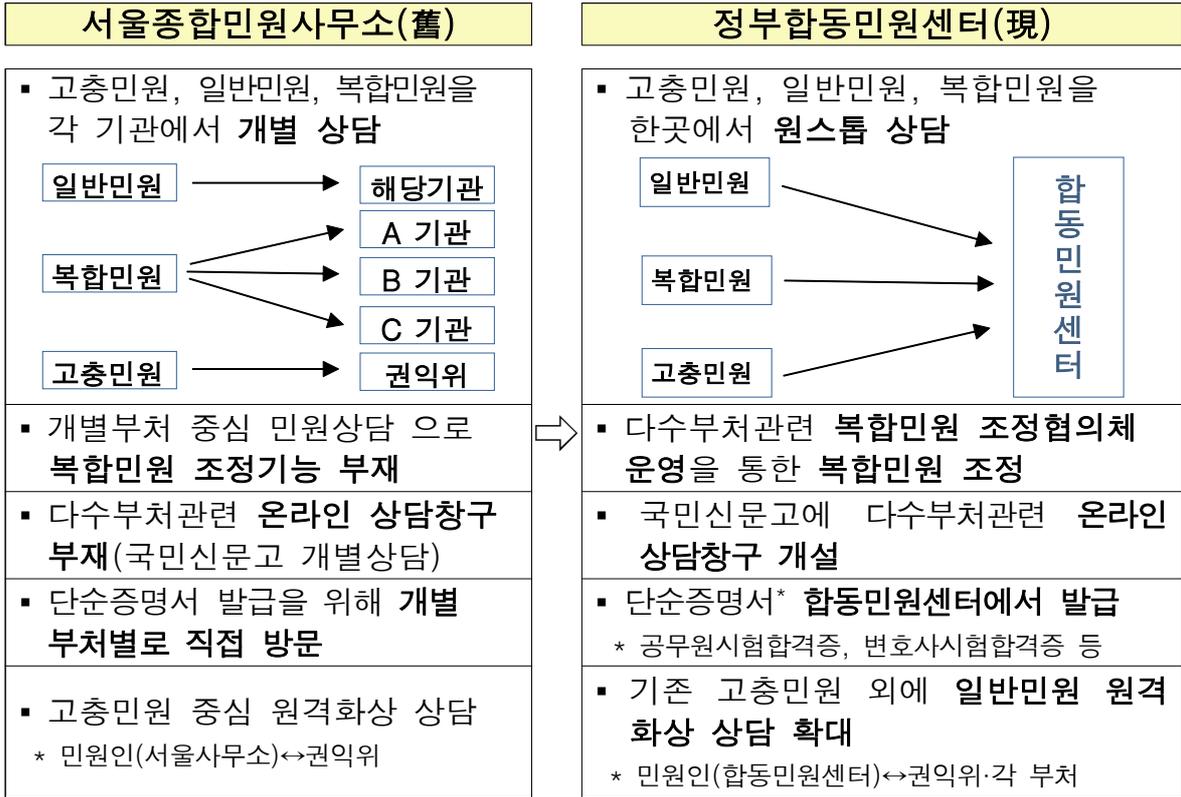
- 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: '94. 4. 8.
- 총무처(현 행정자치부) 소속 정부합동민원실로부터 업무 이관 : '96. 12. 31.
-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소속 변경(국무총리 → 대통령) : '05. 10. 30.
- 국민권익위원회 통합·출범 : '08. 2. 29.
 - 서울, 대전, 부산 등 11개 지역상담센터 운영 : '08. ~ '13. 12.
-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출범 : '14. 12. 15.
 - 서울을 제외한 10개 지역상담센터 폐지 : '13. 12.
 - 2개(서울 및 세종) 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: '14. 12. 15. ~
-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정부합동민원센터 출범 : '19. 10. 1.~
 -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으로 이전해 확대 개편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1,910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일반국민, 공무원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<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>



< 국민콜110 운영 >

□ 국민콜110 상담업무 처리절차

- 국민콜110은 일반민원(정형·반복)을 상담·안내 후 전문상담이 필요시 해당 기관의 콜센터로 연결 처리(1차 상담·안내)
- 각 기관 콜센터는 전문민원(전문·복합)을 상담 처리(2차 상담)



사 업 명
고충민원조사활동(1135 - 35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 위원회	고충처리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5	350
명칭	국민권익증진	국민고충해소	고충민원조사활동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	
고충민원 조사활동	1,310	1,331	1,331	1,324	1,324	△7	△0.5

4. 사업목적

- (고충민원 조사활동 지원) 행정기관 등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나 불편 사항을 조사·처리하여 국민권익을 구제
- (집단민원 중점관리)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여러 기관과 연관되고, 복잡하여 해결이 어려운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
- (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) 민원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, 주거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'달리는 국민신문고'를 운영하여 민원서비스 향상

- (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·운영 활성화 지원)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활성화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·운영을 지원
- (행정기관등 민원처리실태 확인·지도)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에 대한 '민원 서비스 종합평가'를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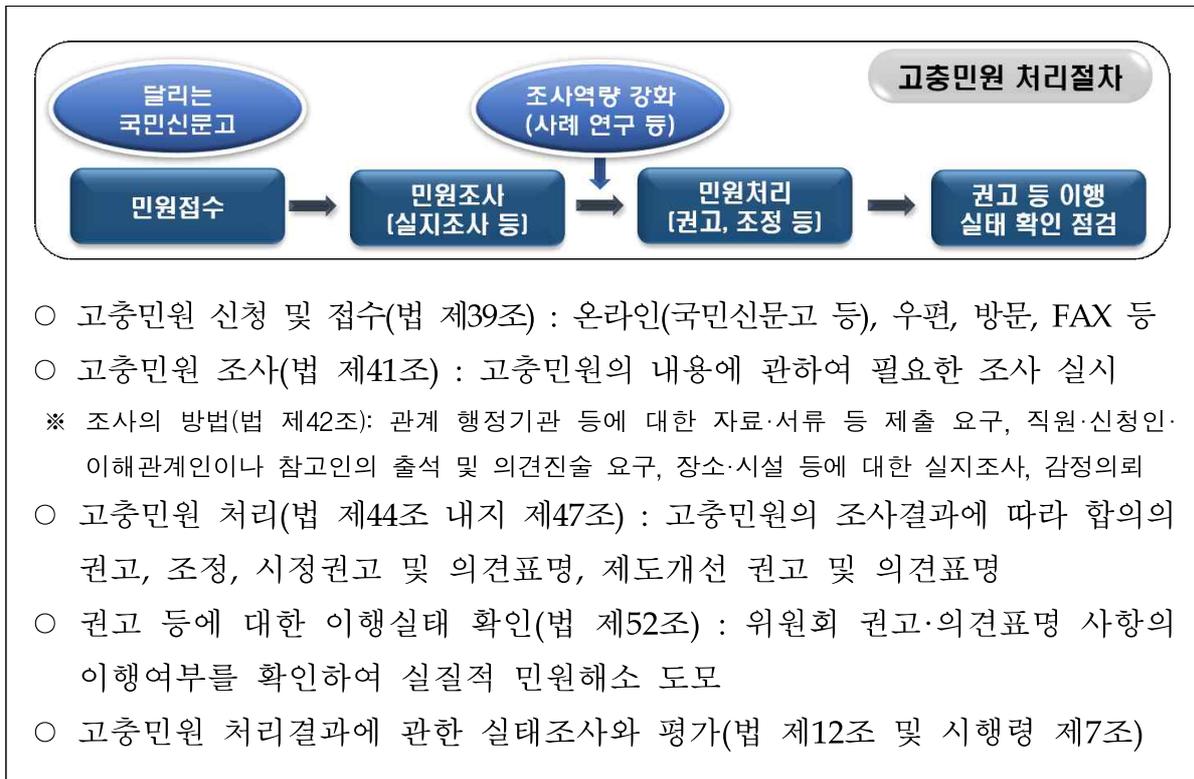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 - 제12조(기능)
 1. 국민의 권리보호·권익구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
 2. 고충민원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
 4.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
 7. 권익구제 교육·홍보계획의 수립·시행
 15.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·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·지도
 17.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·지원 및 교육
 18. 다수인 관련 갈등사항에 대한 중재·조정, 기업고충민원의 조사·처리 등
 - 제41조(고충민원의 조사) 및 제52조(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)
 - 제54조(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) 제2항
 - 제81조(교육과 홍보 등)
- 추진경위
 - '94. 4. 8.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(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)
 - '05. 10. 30.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(「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)
 - '08. 2. 29. 국민권익위원회 설치(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: 해당없음
- 사업기간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: 1,324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: 일반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(1136 - 36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10	1136	360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	2,377	2,644	2,644	3,066	3,066	422	16.0

4. 사업목적

-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, 반부패·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
- 공직사회와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조사
-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·정비
- 구조적·고질적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사례와 문제점 등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27조의2, 제28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및 제30조
-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11조 제6항

○ 추진경위

- 「부패방지법」 제정 : 2001. 7. 24.
- 부패방지위원회 설립 : 2002. 1. 25.
- 부패방지조사평가사업 시작 : 2002. 1. 25.
- 부패발생의 본질적 원인 분석과 제거를 위한 부패유발요인 분석·검토의 도입 필요성 강조(제1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시 대통령) : 2004. 2.
- 부패유발요인 분석제도 도입·운영 근거 법제화(「부패방지법」 개정) : 2005. 7. 21.
-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·시행 : 2006. 4.
- 청렴컨설팅 제도 도입·시행 : 2006.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 및 시행 : 2008. 2. 29.
- 부패영향평가지침 제정 : 2008. 6.
- 입법과정에서의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: 2009. 6.
-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·평가 명문화 : 2016. 3.
- 청렴컨설팅 제도 명문화 : 2016. 3.
-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·공단 사규에 대한 직권 부패영향평가 도입 : 2019. 10.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-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3,066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정부기관, 일반국민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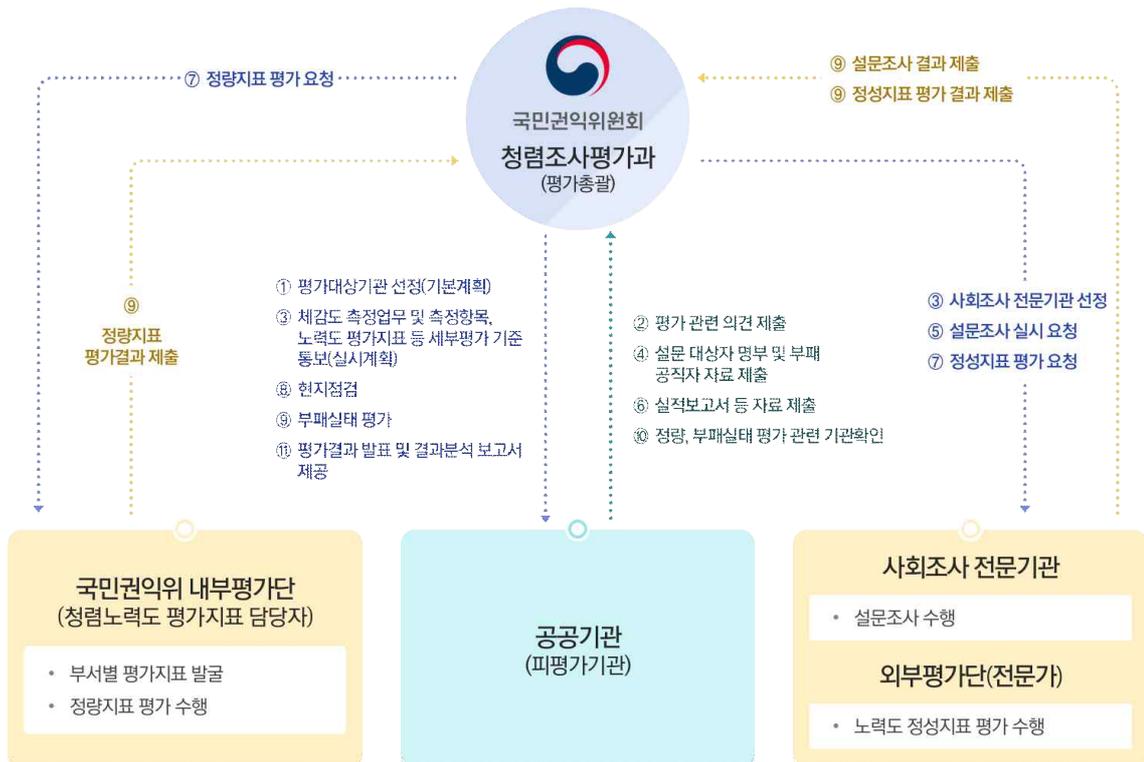
7. 사업 집행절차

□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

< 평가 체계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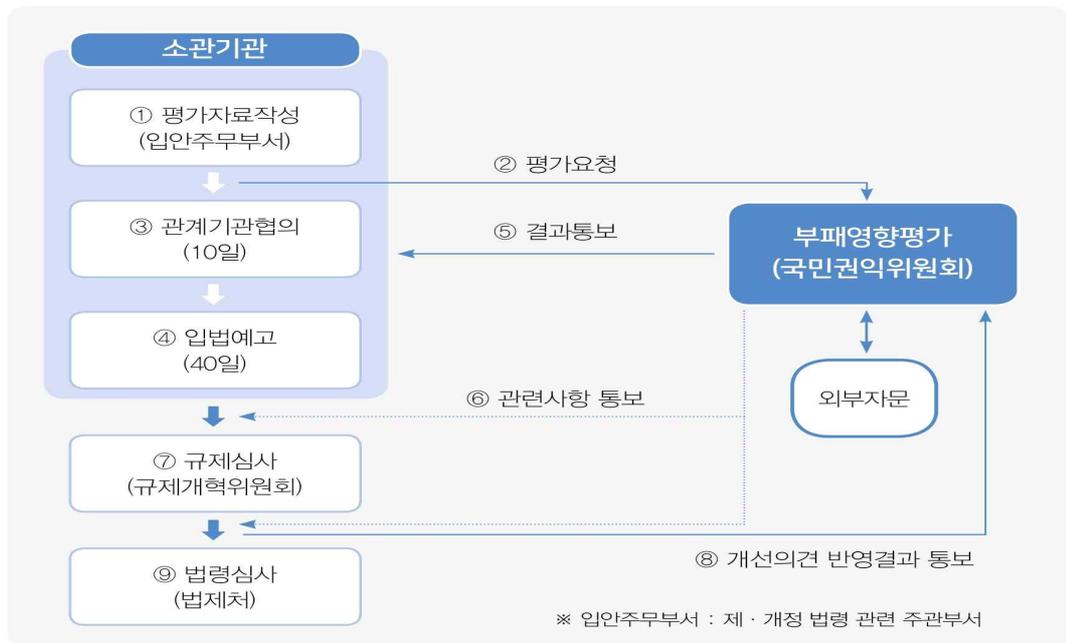
< 추진 절차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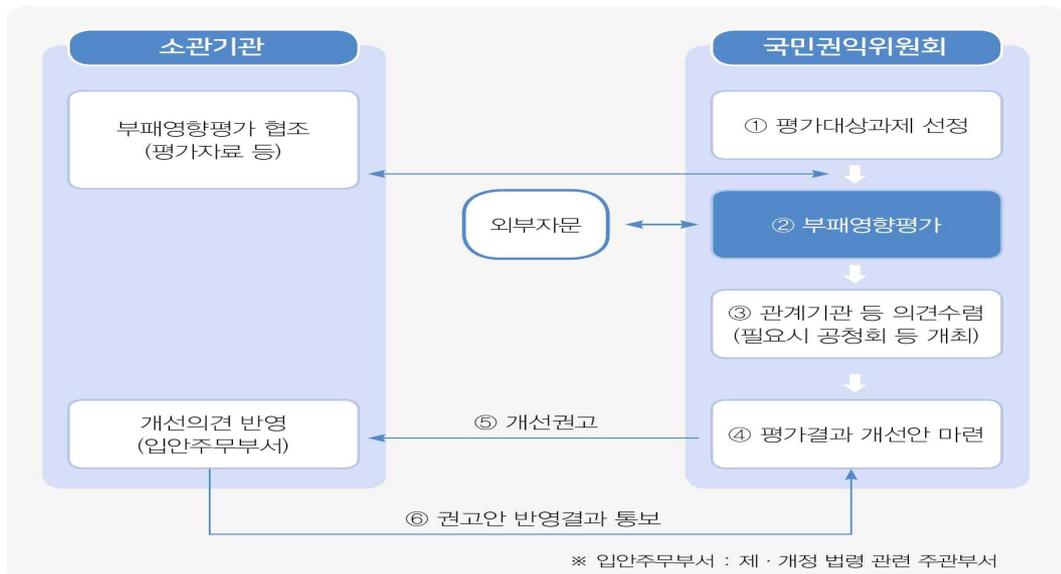
□ 부패영향평가

- 개념 : 법령을 분석·평가하여 그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발굴·개선
- 평가항목 : 4개 분야 및 12개 세부평가항목
 - ① 준수 : 준수부담의 합리성, 제재규정의 적정성, 특혜발생 가능성
 - ② 집행 : 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, 위탁·대행의 투명성·책임성, 재정누수 가능성
 - ③ 행정절차 : 접근의 용이성, 공개성, 예측가능성
 - ④ 부패통제 : 이해충돌가능성,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, 소극행정 유발가능성

< 제·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>



<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>



□ 청렴컨설팅

- 개념 : 반부패 역량 강화가 요구되거나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권익위·멘토기관·외부전문가가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
- 방식 : '18년부터 1개 멘토기관(청렴도 우수기관)과 2~3개 멘티기관(청렴도 저조기관)이 그룹을 설정하여 멘토링을 진행

< 청렴컨설팅 진행 절차 >

업무내용	일정	세부내용
사전 수요 조사	1월	- 멘토-멘티 희망기관 사전 수요 조사 및 정보공유
↓		
컨설팅 신청	2월	- 권역별·유형별 그룹 구성·신청 ※ 그룹별 1멘토-2멘티로 구성하여 신청
↓		
컨설팅 착수회의	2월	- 10개 그룹 내외 최종 선정 - 멘토-멘티기관 대상, 청렴컨설팅 착수회의 개최 ※ 향후 일정 공유, 반부패 역량 진단을 위한 자료 요청 등
↓		
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	3~4월	- 멘티기관 내부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- 각종자료 제출 및 분석 ※ 설문조사, 부패통계, 종합청렴도 결과 등 분석
↓		
제1차 자문회의	4~5월	- 설문조사 및 각종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종합청렴도 저조 원인 파악 ※ 권익위, 멘토-멘티기관, 자문위원 참여
↓		
그룹별 자문회의	4~5월	-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검토 ※ 멘토-멘티기관 참여
↓		
컨설팅 보고서 초안 작성	5월	- 멘티기관별 컨설팅 보고서 작성 ※ 멘토-멘티기관 협업으로 보고서 작성
↓		
제2차 자문회의	6~7월	- 보고서 검토 및 연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이행상황 점검 ※ 권익위, 자문위원, 멘토-멘티기관 참여
↓		
그룹별 자문회의 및 컨설팅 보고서 제출	7~8월	- 멘티기관의 계획 진행상황 공유 및 개선방안 검토 ※ 멘토-멘티기관 참여 - 컨설팅 보고서 최종 작성·제출
↓		
컨설팅 성과공유	9~12월	- 우수사례 공유 및 성과 평가

사업명
청렴교육및의식확산(1136 - 361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청렴연수원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1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청렴교육및의식확산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렴교육및의식 확산	2,473	2,152	2,152	2,239	2,239	87	4.0

4. 사업목적

-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의무화에 따라 양질의 반부패·청렴 교육 실시를 위한 청렴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시설 관리
-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청렴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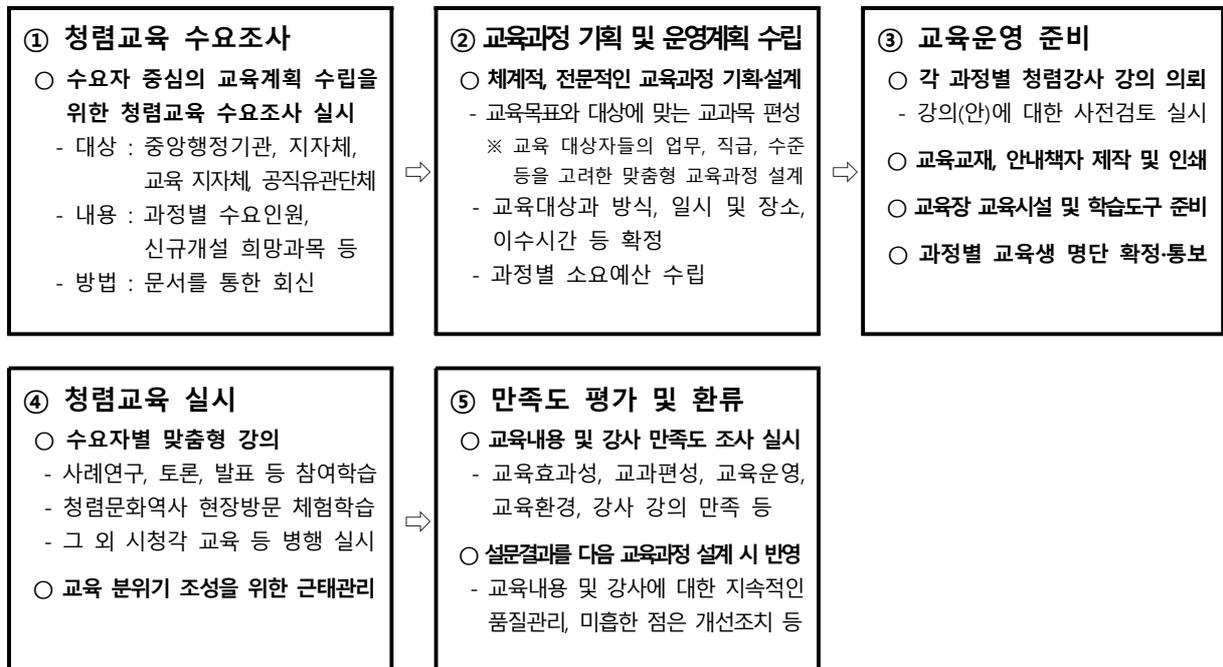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81조의2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8조의2
 -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14조의5
- 추진경위
 - 2003. 1월 부패방지위원회('02.1월 출범) 반부패·청렴교육사업 시작
 - 2007. 3월 청렴교육관 개관 및 운영 개시
 - 2012.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 출범
 - 2012. 11월 「공무원교육훈련기본법」에 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
 - 2014. 7월 청렴연수원 숙소동 준공
 - 2016. 9월 「청탁금지법」 등 제·개정으로 공공기관 부패방지 교육 의무화
 - 2019. 9월 일반국민 대상 청렴교육 실시(국민 참여예산)
 - 2022. 5월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시행으로 공공기관 이해충돌방지 교육 의무화

6. 주요내용
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,239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, 학생, 일반국민

7. 사업 집행절차



사 업 명
공직자행동강령운영(1136 - 363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3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공직자행동강령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공직자행동강령운영	69	94	94	89	89	△5	△5.3

4. 사업목적

-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의 지속적 보완·발전방안 연구 및 각급 기관의 자율적 행동강령 운영 지원을 통한 청렴기반 조성
-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 및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·이행점검을 통한 행동강령 이행력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, 제9조, 제10조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,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
○ 추진경위

- 사업 시작연도, 추진배경, 부처별 중점과제, 대통령 공약사항 등
- 부패방지법 제정(2001.7.), 동법 시행령 제정(2001.11.)
-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(2003.5.)
-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권고안 시행(2004.9.)
- 부패방지법 개정(2005.7.), 동법 시행령 개정(2005.12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05.12.)
 - ※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, 알선·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
-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제·개정 지침 시행(2006.4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(2006.12.)
- 부패방지법 개정(2007.8.), 동법 시행령 개정(2007.12.)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, 동법 시행령 제정(2008.2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08.2.)
 - ※ 종교 편향 금지 추가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08.11.)
 - ※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, 이해관계 직무범위 확대 등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08.12.)
 - ※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규정 신설, 외부강의 등의 신고대상 확대 등
-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(2010.11.2.), 시행(2011.2.3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12.2.29., 2014.6.30., 2016.9.26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16.9.27.),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(2016.9.27.)
 - ※ 청탁금지법 시행(2016.9.28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18.1.16.), 시행(2018.4.17.)
 - ※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,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, 가족 채용 제한, 수의계약 체결 제한, 퇴직자 사전 접촉의 신고, 민간부문 청탁 금지 등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18.2.28.), 시행(2018.4.17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18.12.24.)
 - ※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,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
-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(2018.12.24.), 시행(2019.3.25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19.1.8., 2019.10.7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20.4.7.), 시행(2020.5.27.)
 - ※ 청탁금지법 개정(2020.5.27.)
-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(2020.4.7.), 시행(2020.5.27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(2020.4.6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·시행(2020.5.11.)
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(2021.11.30.), 시행(2022.1.13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·시행(2022.1.5.)
-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·시행(2022.6.2.)
-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·시행(2022.6.2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·시행(2022.6.13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·시행(2022.8.5.)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·시행(2023.9.5.)

6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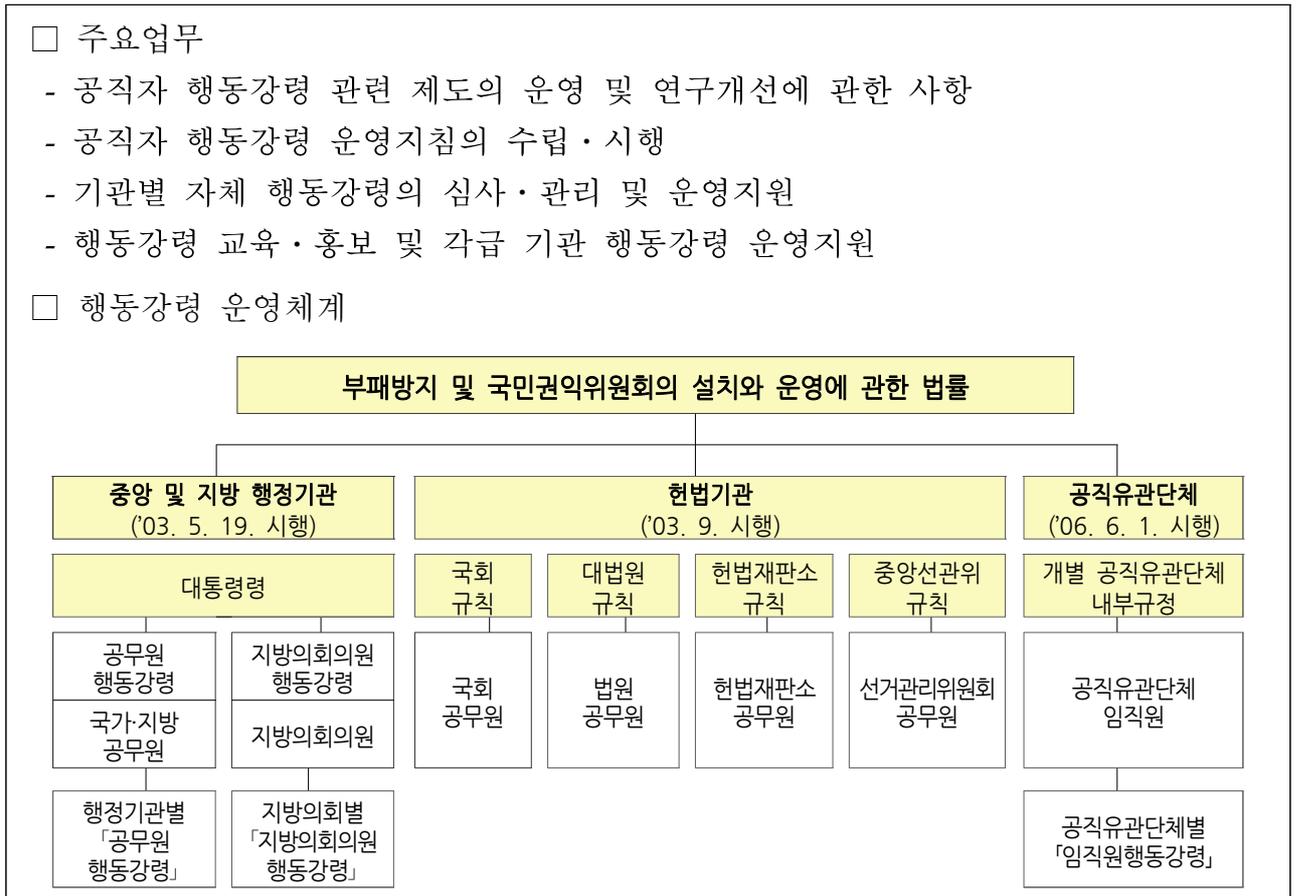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89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, 일반국민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□ 주요업무

-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제도의 운영 및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
-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수립·시행
-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의 심사·관리 및 운영지원
- 행동강령 교육·홍보 및 각급 기관 행동강령 운영지원

□ 행동강령 운영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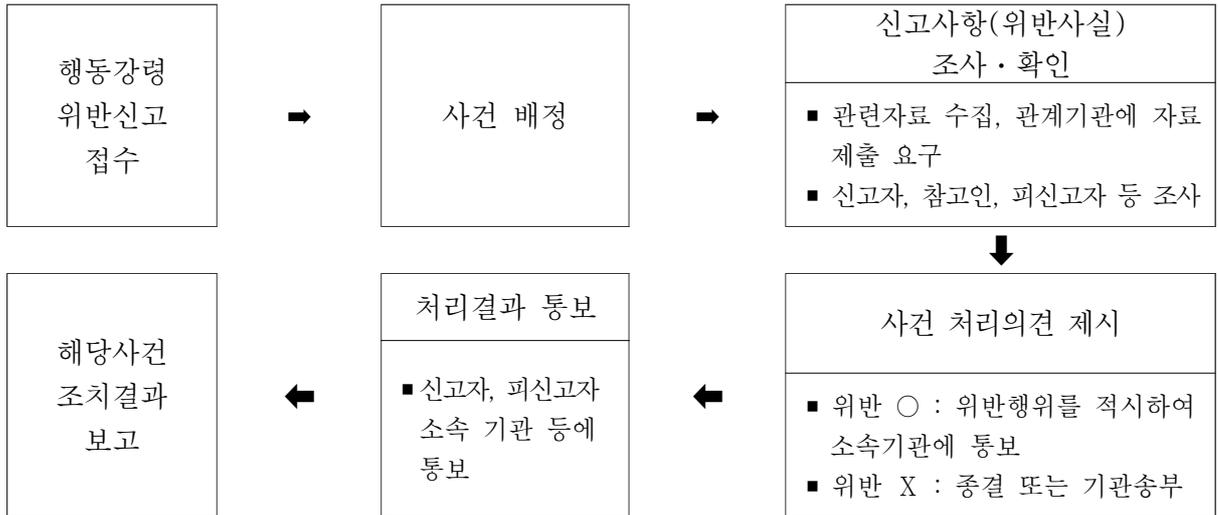


□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 처리

○ 주요업무

-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처리
- 행동강령 운영·이행 실태 점검 과정에서 인지된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건처리

○ 업무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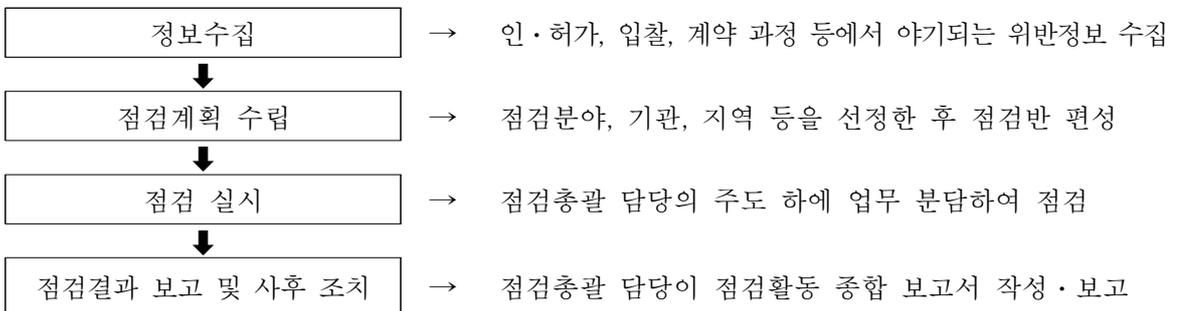


□ 행동강령 운영·이행 실태 점검

- 점검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
- 인·허가, 지도·단속 등 부패 취약분야 공직자 및 고위공직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
- 점검사항

운 영 실 태	이 행 실 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동강령 교육, 자체 점검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 ○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상 애로사항 및 의견수집 ○ 기관별 행동강령 수범사례 발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행위 ○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행위 ○ 경조사 통지 위반 행위 ○ 외부강의등의 신고 위반 및 초과사례금 수수 행위 등

○ 업무흐름도



사 업 명
부패신고자보호보상(1136 - 364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심사보호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4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부패신고자보호보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부패신고자보호보상	2,999	2,832	2,832	2,989	2,989	157	5.5

4. 사업목적

-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·보상을 통한 신고 활성화 도모와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에 기여
- 합리적인 보상금·포상금·구조금 지급을 위한 보상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홍보함으로써 국민의 참여와 관심 제고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62조~제71조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5조~제82조

○ 추진경위

- 2001년 「부패방지법」 제정을 통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도입·시행

<사업 추진 경과>

- 「부패방지법」 제정·공포('01.7.24.) :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사업 개시('02.1.25.)
- 「부패방지법」 일부개정('05.7.21.) : 보상금 지급요건 완화 및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등
- 「부패방지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'05.12.30.) :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2억원→20억원) 등
- 「부패방지법」 일부개정('07.8.3.) : 민간인 신고자 보호기능 강화 등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·공포('08.2.29.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('09.5.28.) :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5천만원 → 1억원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('15.10.20.) :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1억원 → 2억원), 보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20억원 → 30억원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'19.10.17. 시행) :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(위원회, 소속·감독기관에 신고→국회 또는 법원에서의 증언, 수사기관에 고소·고발한 경우도 포함),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 도입,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,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'20.6.11. 시행) :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(3년→5년, 3천만원→5천만원) 등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 등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 일부개정('22.7.5., 7.19. 시행) : 구조금 지급 사유 확대, 긴급 구조금 신설, 포상금 환수 규정 및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, 포상금 한도액 상향조정(2억원 → 5억원) 등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('23.6.22. 시행) :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,989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, 부패행위 신고자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○ 신고자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	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보상·구조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·확인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전원위원회의 지급 결정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·구조금의 지급 신청 -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발굴 - 보상·포상·구조금의 지급 요건, 지급 사유 등 조사·확인 - 보상·포상·구조금의 지급 요건,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·의결 -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 - 보상·포상·구조금 결정서 정본,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
○ 신고자 보호 업무	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보호신청 접수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조사 및 확인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위원회 심의·의결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처리결과 통지 (위원회→신고자)</div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서 접수·처리부 등록 (신분보장등조치,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, 신변보호, 책임감면) * 부패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권 '22.7.5.부터 도입·시행 - 신청인·피신청인·참고인등 조사, 관련자료 제출 요구 1. 인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신분보장)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취소 요구 등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- (비밀보장)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, 고발 - (신변보호) 경찰청, 지방경찰청,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(*긴급한 경우 위원회 사후보고) - (책임감면)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 요구 2. 기각 : 신청인의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 3. 각하 :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- 결정서 정본 첨부 - 신분보장등조치 결정의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 미제기 시 확정

사 업 명
공익신고제도운영(1136 - 365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심사보호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5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공익신고제도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공익신고제도운영	2,801	1,923	1,923	1,741	1,741	△182	△9.5

4. 사업목적

-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·안전·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함으로써 사회신뢰 기반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
- 공익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·지원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내부 신고자 인식 전환 등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산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 도모
-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 및 협업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기반 마련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4조, 제26조, 제26조의2, 제27조

○ 추진경위

<사업 추진 경과>
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정·공포('11.3.29.) :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사업 개시('11.9.30. 시행)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일부개정('16.1.25. 시행) :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(180개→279개), 불이익 조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,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'내부 공익신고자'로 제한, 보상금 상한액 상향조정(10억→20억),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, 공익신고 조사·수사결과에 대한 신고자의 이의신청권 및 위원회의 재조사·재수사 요구권 신설 등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일부개정('18.5.1. 시행) : 공익신고 대상분야 확대('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' 신설) 및 대상법률 확대(279개→284개),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신설, 징벌적 손해배상규정 신설, 긴급 구조금 도입,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 상향(3년→5년, 3천만원→5천만원),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 처벌수준 강화, 보상금 상한액 상향조정(20억→30억) 등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일부개정('18.10.18. 시행) :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,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상향(2천만원→3천만원)하고 이행시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이행강제금 강화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일부개정('20.11.20. 시행) :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(284개→467개)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일부개정('21.4.20.) :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(467개→471개, '21.4.20. 시행), 공익신고 관련 재판에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 신설('21.7.21. 시행),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신고 송부·종결 근거의 법률 상향,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,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(2년→3년), 포상금 환수 규정 및 중복지급 금지 규정 신설 등('21.10.21. 시행)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일부개정('23.3.21.): 공직자였던 자의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한('23.6.22. 시행),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 수입회복에도 보상금 지급, 긴급한 경우 위원장이 구조금 지급('23.9.22. 시행)
-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'23.12.19. 시행): 보상금 산정기준을 '보상대상가액의 20%'에서 '보상대상가액의 30%' 등으로 확대하고,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'2억원'에서 '5억원'으로 상향 등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,741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, 공익신고자 등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<p>신고 접수 (신고자→위원회)</p>	<p>- 신고방법 : 방문, 우편, 인터넷, 팩시밀리 *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미접수</p>
<p>↓</p> <p>신고 심사 (위원회)</p>	<p>- 심사내용 :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 - 심사방법 : 신고자 등의 출석의견진술 요구, 출장 확인,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협조요청</p>
<p>↓</p> <p>신고사항 처리 (위원회)</p> <p>* 60일 이내, 필요시 30일 연장 가능</p>	<p>1. 이첩 - 지도·감독·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거나,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(법 제9조제3항, 시행령 제9조)</p> <p>2. 송부 - 이첩 또는 종결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(법 제9조제3항, 시행령 제10조)</p> <p>3. 종결 -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,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, 보완요청에 대해 2회 이상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등 (법 제10조제2항)</p>
<p>↓</p> <p>처리결과 통지 (조사·수사기관→위원회)</p>	<p>- 이첩·송부·종결 등의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(이첩·송부의 경우 보호·보상제도 안내)</p>
<p>↓</p> <p>조사·수사결과 통보 (조사·수사기관→위원회)</p>	<p>- 이첩·송부받은 조사·수사기관은 조사·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(법 제9조제5항)</p>
<p>↓</p> <p>조사·수사결과 통지 (위원회→신고자)</p>	<p>- 조사·수사결과와 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</p>
<p>↓</p> <p>조사·수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(위원회→조사·수사기관)</p>	<p>- 재조사·재수사 요구 (위원회 직권, 신고자 이의신청)</p>

* 조사·수사기관에 직접 접수된 공익신고는 필요한 조사·수사 실시, 국회의원·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 신고는 위원회 또는 조사·수사기관에 이송, 기업 또는 단체 등의 대표자·사용자에게 접수된 공익신고는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위원회 또는 조사·수사기관에 이송

○ 공익신고자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
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보상·구조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 추천 발굴	- 신고자가 위원회에 보상·구조금의 지급 신청 -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및 발굴
↓	
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	- 보상·포상·구조금의 지급 요건, 지급 사유 등 조사·확인
↓	
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	- 보상·포상·구조금의 지급 요건,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 심의·의결
↓	
전원위원회의 지급 결정	- 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 결정
↓	
보상·포상·구조금 지급	- 보상·포상·구조금 결정서 정본, 결정통지서 신고자에게 송부 및 보상· 포상·구조금 지급

○ 공익신고자 보호 업무

처리절차	처 리 내 용
보호신청 접수	- 신청서 접수·처리부 등록 (보호조치,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, 신변보호, 책임감면)
↓	
조사 및 확인	- 신청인·피신청인·참고인등 조사, 관련자료 제출 요구
↓	
위원회 심의·의결	1. 인용 - (보호조치)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불이익조치 취소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- (비밀보장) 비밀보장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, 고발 - (신변보호)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(*긴급한 경우 위원회 사후보고) - (책임감면)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책임감면 요구 2. 기각 : 신청인의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등 3. 각하 :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
↓	
처리결과 통지 (위원회→신고자)	- 결정서 정본 첨부 - 보호조치결정의 경우 30일 이내 행정소송 미제기 시 확정

사 업 명
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(1136 - 366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 위원회	심사보호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 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6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 (B-A)	(B-A)/A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	
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	659	854	854	991	991	137	16

4. 사업목적

-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사건의 신속·정확한 처리를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예방 및 국가재정 누수 방지
 - (공공재정환수법 교육 및 홍보)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뉴얼·사례집 제작·배포 등을 통한 법 대상기관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
 - (이행실태점검)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등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 각급 기관의 제도 운영실태 점검

- (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지원) 전문가 자문회의 등 공공재정환수법 발전방안 연구 등을 통해 법 운영체계 개선 등 지원
- (부정수급 신고처리) 담당자 교육, 대국민 홍보를 통한 신고활성화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건의 신속·정확한 처리
- (조사업무 지원) 신고조사 관련 통계 관리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지원
- (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·포상금)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·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자 등에게 법정정보상금 지급 및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자 등에게 포상금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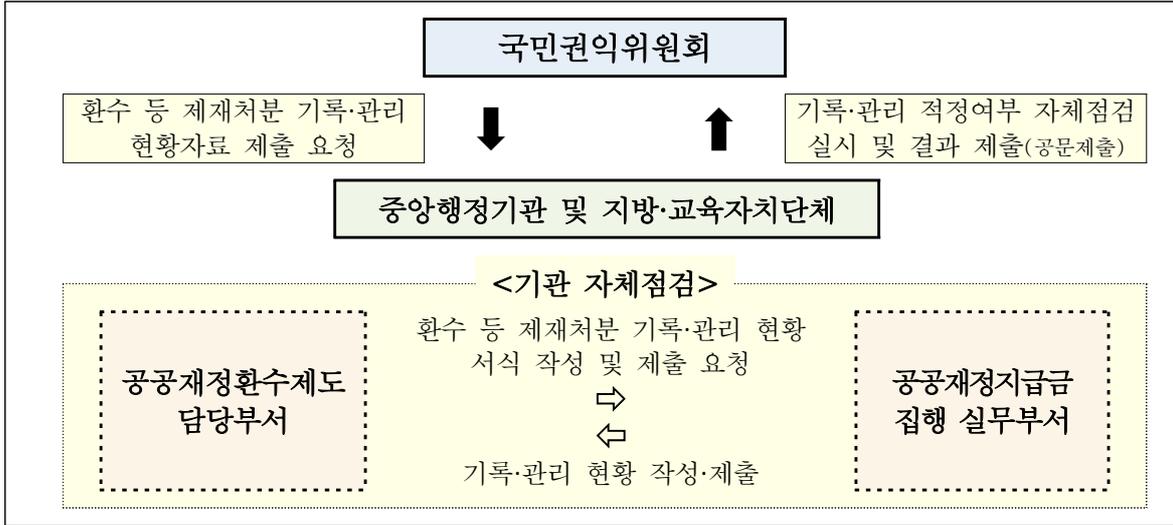
① 법령상 근거

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55조, 제59조
-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제9조의2 제3항 제2호~제5호
- 「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제6조의2 제5항

② 추진경위

-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('19.3~'23.4.)
 - 19대 국회제출('15.6.17.), 정무위 법안소위 심의('15.11월),
 - 법안 폐기 및 재입법절차 추진('16.5월~)
 - 20대 국회 제출 대비 대국민 입법예고('16.5.27.~6.1.)
 - 20대 국회 제출('16.6.27.), 국회 정무위 공청회 개최('17.9.25.)
 -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('18.3.28.),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('18.7.24.)
 -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('18.9.20.)
 -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국회 본회의 의결 ('19.3.27.), 공포('19.4.16.)
-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운영('13.10.~'23.4.)
 - 제2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회의('13.9.3.)
 - 제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('13.9.12.)
 - 「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」 업무 개시('13.10.15.)
 - 「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」로 확대·개편('15.1.6.)
 - 「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」('14.12.4.)
- 공공재정환수제도과와 복지·보조금부정신고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고, 부서 명칭을 공공재정환수관리과로 변경('23.5.1.~)

○ 업무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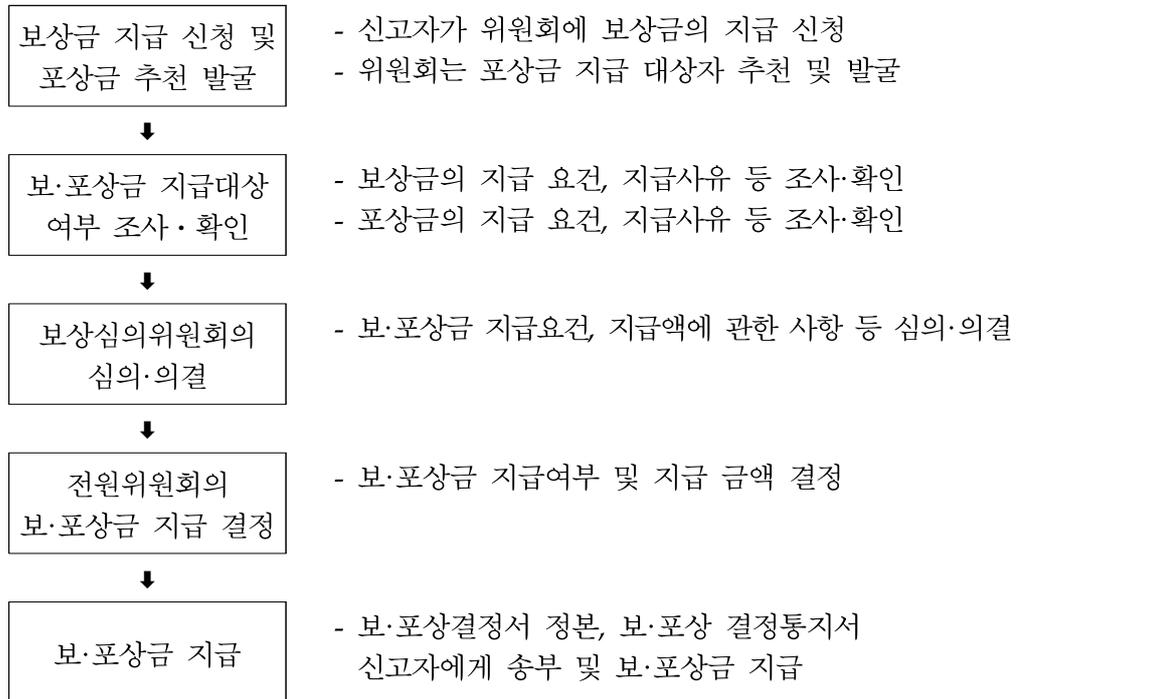


※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·관리 이행실태 점검(매해 상·하반기)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전수 및 취약분야 점검을 실시한 후 제재처분 미이행 기관 등에 이행 권고

□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금·포상금 지급

-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에 기여한 경우는 보상금을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

○ 업무흐름도



사 업 명
청탁금지제도운영(1136 - 367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 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 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7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청탁금지제도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청탁금지제도운영	235	303	303	244	244	△59	△19.5

4. 사업목적

- 각급 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교육, 강의 및 각종 교육자료 지원 등을 통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
-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법 해석기준 마련
-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조사 등의 처리
- 청탁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자 보·포상금·구조금 지급을 통한 자발적 청탁금지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청탁금지법 제12조(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), 제19조(교육과 홍보 등), 같은법 시행령 제42조(교육 등)

○ 추진경위

- 국무회의시 '공정사회 구현,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'의 일환으로 입법 필요성 제기('11.6.14.)
- 정부입법절차 진행('12.5.7.~'13.7.30.), 정부안 국회 제출('13.8.5.)
- 정무위 법안소위 법안심사('14.4.25. 등 6회 실시)
-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('15.1.12.)
 - ※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하고, 법 적용대상을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입법적 합의
-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및 본회의 의결('15.3.3.)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정·공포('15.3.27.)
- 공개토론회, 직종별·전문가 간담회, 정책토론 등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, 시행령안 마련('15.3월~'16.5월)
-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 정부입법절차 진행('16.5.13.~9.6.)
 - ※ 사교·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 가액 범위(음식물 3만원 이하, 경조사비 10만원, 선물 5만원)
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약칭: 청탁금지법) 시행('16.9.28.)
-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('18.1.17.)
 - ※ 선물·경조사비 가액 범위 및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상한액 개정(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10만원, 경조사비 5만원(화환·조화의 경우 10만원 유지), 국공립학교·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100만원)
- 청탁금지법 ('19.11.26.) 및 시행령('20.5.27.) 개정
 - ※ 외부강의등 관련 ①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가능, ② 사례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
- 청탁금지법 시행령('20.5.27.) 개정
 - ※ 법률 개정('19.11.26.)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 정비, 이첩·송부 사건에 대한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기간 규정, 과태료 부과 통보 대상자에 대한 사실 통지
- 청탁금지법 시행령('20.9.10.) 개정
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, 태풍 피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고려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당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('20.9.10.~'20.10.4.)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

- 청탁금지법 시행령('21.1.19.) 개정
 - 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지속,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된 농임축수산업계를 고려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당해 설 명절 기간('21.1.19.~'21.2.14.) 동안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
- 청탁금지법 ('21.12.7.) 개정
 - ※ 부정청탁 대상직무(형의 집행, 수용자의 지도·처우·계호 업무 등) 추가, 비실명 대리신고제 및 구조금 제도 도입(신설) 등
- 청탁금지법 ('21.12.16.) 개정
 - ※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, 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 배로 변경
- 청탁금지법 시행령('22.1.5.) 개정
 - ※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하여, 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며, 해당 기간을 설날·추석 전 24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일까지로 정함
- 청탁금지법 시행령('23.8.30.) 개정
 - ※ 선물의 범위에 물품·용역상품권 추가,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(설날·추석 20만원)에서 15만원(설날·추석 30만원)으로 상향 조정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44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등, 일반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사 업 명
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(1136 - 368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8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	286	281	281	226	226	△55	△19.6

4. 사업목적

-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, 제도 운영 지원, 위반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·포상 등을 통해 법의 안정적 정착 도모
- (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교육)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담당관,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 시행과 교육자료 제작 등 수행
- (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) 명확한 법 해석 기준 수립,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체계 개선 등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운영

- (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)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법 위반신고 처리 및 제도운영 실태조사 등 수행
- (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·포상금 등)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법정보상금 등 지급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이해충돌방지법 제17조, 제19조, 제20조, 제24조 등
- 추진경위
 - 「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」 국회 제출('13.8.)
 - ※ 부정청탁, 금품 수수 및 이해충돌방지 3가지 분야 모두 포함
 -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제외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본회의 의결('15.3.) 및 시행('16.9.)
 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에 이해충돌방지규정 우선 반영·시행('18.4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」 입법예고('19.7.19.~8.28.)
 -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0대 국회 제출('20.1.)
 - 차관·국무회의 의결 및 정부안 제21대 국회 제출('20.6.)
 - ※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기존 법률안 폐기, 재입법예고('20.5.19.~6.8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」 정무위 전체회의('21.4.22.), 법사위 전체회의·본회의 의결('21.4.29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정('21.5.18.), 시행('22.5.19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」 제정('21.12.31.), 시행('22.5.19.)
 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」 제정('22.2.18.)

6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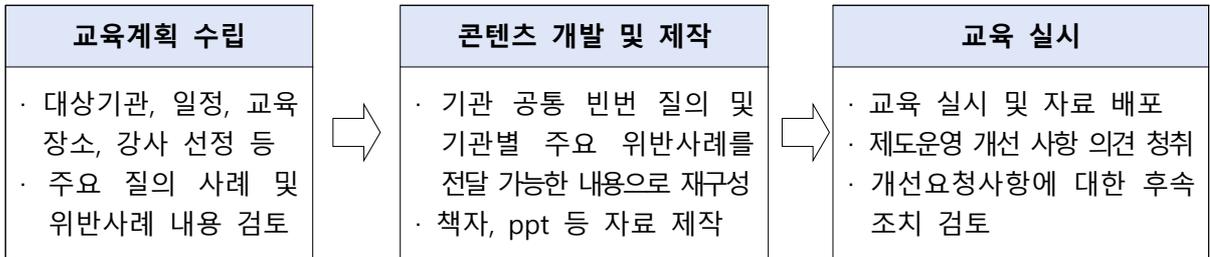
- 총사업비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226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, 일반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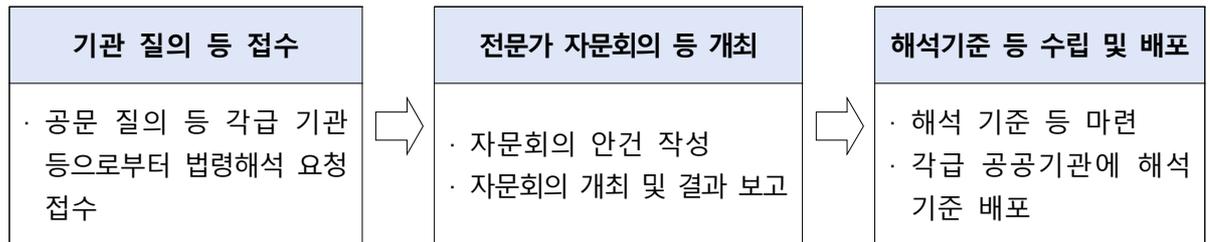
□ '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' 주요업무

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·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
-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개선 및 해석기준 수립 등을 위한 자문회의 운영
-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의 안내·상담·접수·처리 등
-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

<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담당자 교육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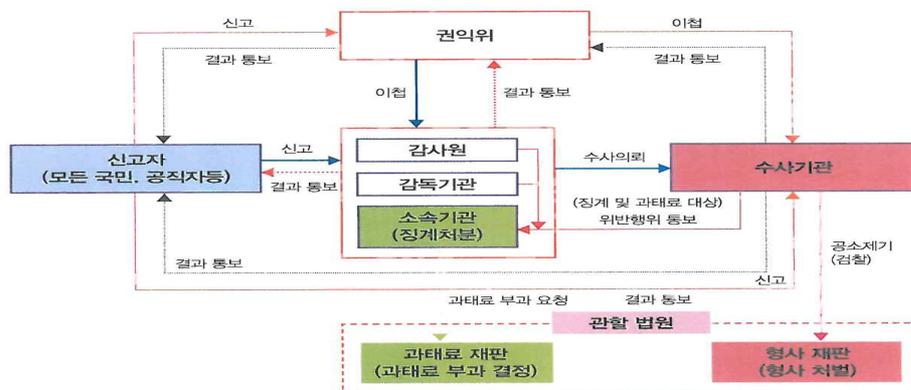
<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원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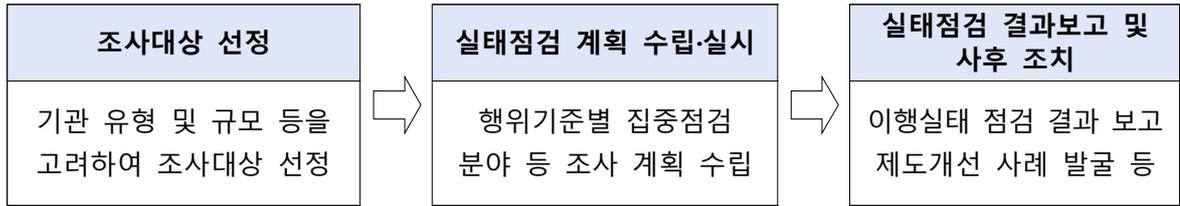
<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 등의 처리 >

- 위반신고 접수처리 : 이해충돌방지법 제18조에 의해 접수된 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의 처리

* 법 위반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, 「감사원법」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으로, 그 외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으로 이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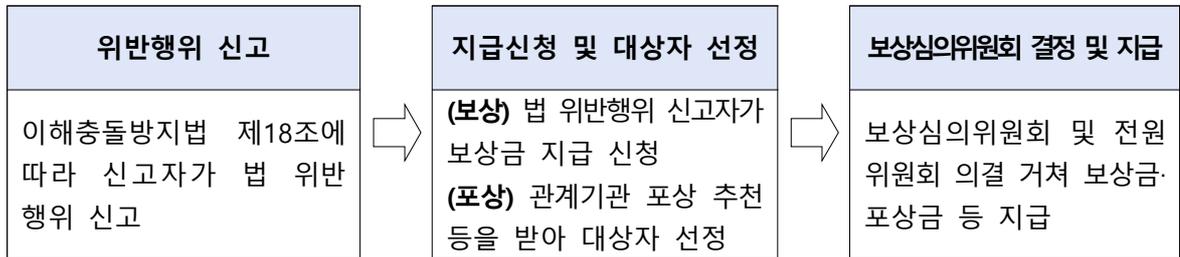


- 이행실태 점검 등 : 법 제17조제4호에 따라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이행 실태점검



<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·포상금 등 >

-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,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(재량), 같은 조 제6항에 의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(의무)



사 업 명
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(1136 - 369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부패방지국		010	016
명칭					일반·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6	369
명칭	국민권익증진	반부패청렴정책강화	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채용비리통합 신고센터운영	-	114	114	109	109	△5	△4.4

4. 사업목적

-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채용비위에 대한 신고 접수·처리 및 공공기관 채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 근절 추진
- 공공기관 공정채용 교육 등을 통한 공정채용 문화 정착 도모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법령상 근거
 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59조
 -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4조

○ 추진경위

○ 청년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청년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고,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차원 종합 관리감독 추진

- ▶ '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'('18.11~'22.12) 운영 만료 / 한시·임시조직
 - 설치배경 :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「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」을 국민권익위에 설치('18.11.)
 - 운영근거 : 「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총리 훈령)」
 - 주요 업무 :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실시
- ▶ 정부 국정과제로 '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' 설치 지정('22.5.)

국정목표 4.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

91.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

□ 주요내용

- (공정기반 구축)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 확산
 - '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'를 통한 상시 단속·점검, 신고 접수·처리 및 직권조사, 교육·컨설팅 등 추진으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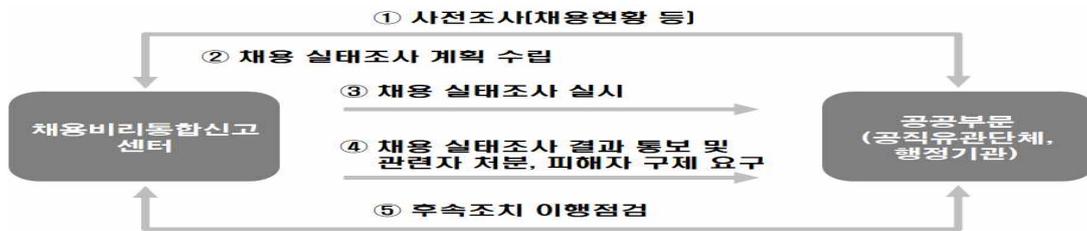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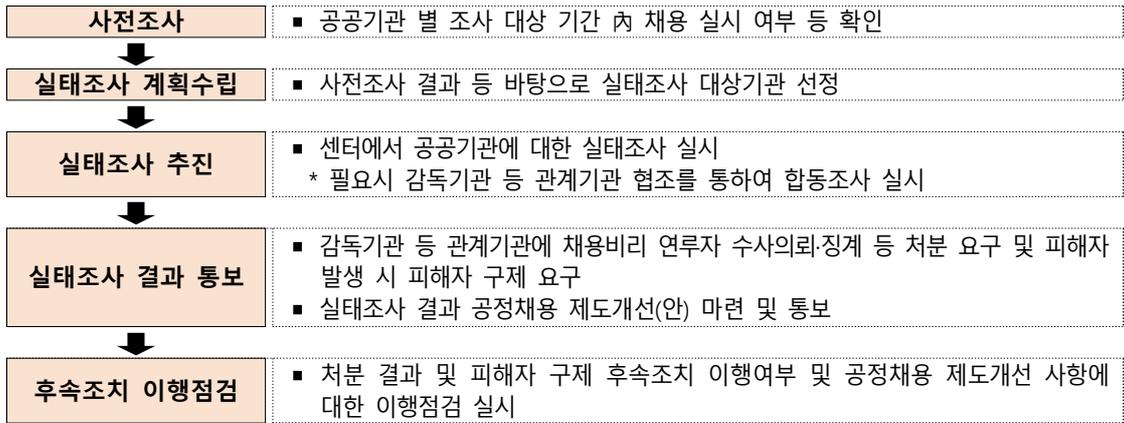
▶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'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' 출범('23.1.)

6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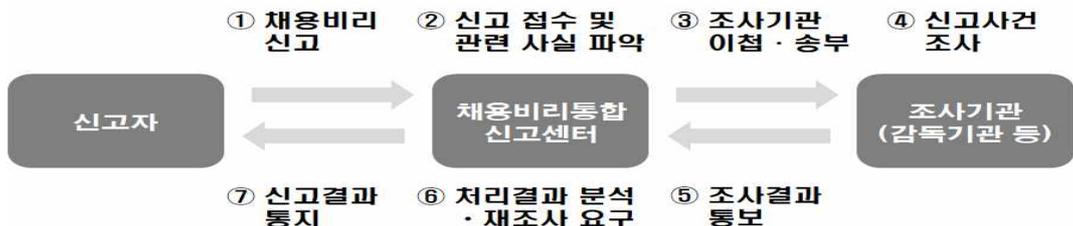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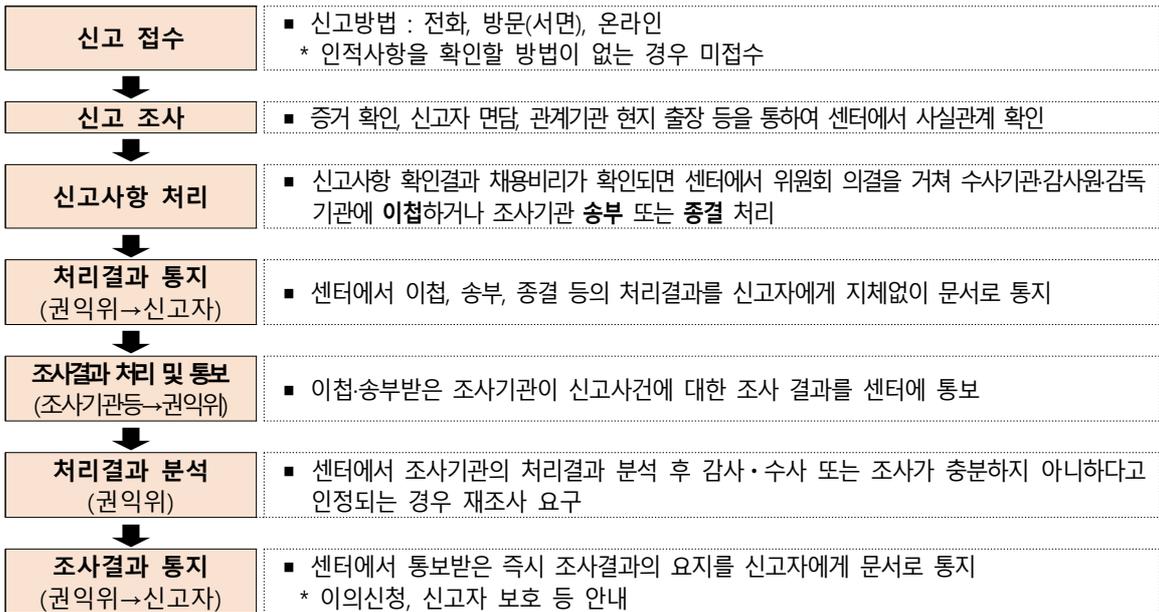
- 총사업비 : 해당 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09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공직자, 일반국민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 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1 실태조사



2 신고사건 처리



사 업 명
행정심판운영(1137 - 370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일반회계	국민권익위원회	행정심판국, 행정심판통합기획단		010	016
명칭					일반지방행정	일반행정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1100	1137	370
명칭	국민권익증진	행정심판	행정심판운영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(%)
○					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 결산	2023년		2024년		증감	
		본예산	추경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행정심판운영	1,065	1,069	1,069	1,177	1,177	108	10.1

4. 사업목적

- (행정심판운영지원)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상임위원 활동 수당, 국선 대리인·자문 사례비, 공공요금 등 경상경비
- (전문검토위원운용) 행정심판 사건 중 보훈사건 조사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검토위원으로 채용·운용
- (담당자전문교육등) 각급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청 업무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심판제도 운영
- (모의행정심판경연)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행정심판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여 행정심판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 도모
- (행정심판통합추진) 중앙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통합, 행정심판의 독립성·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○ 법령상 근거

- 「대한민국 헌법」 제107조제3항

제107조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.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,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

- 「행정심판법」 제6조제2항

제6조(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) ②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(이하 “국민권익위원회”라 한다)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·재결한다. (이하 생략)

- 정부 국정과제 13번 ‘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’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‘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’ 선정

< 국정과제 ‘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’ 주요 내용 >

-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쉽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별법에 따른 행정심판기관의 통합 및 서비스 질 제고 필요
-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하여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 -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 대상 특별행정심판을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- 행정심판의 독립성, 전문성 강화
 - 행정심판위원 신분보장, 다양한 분야로 위원자격 개방, 청구인에게 조정신청권 부여

- 「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국무총리훈령 제848호)」

<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>

행정기관의 위법·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들이 권익 구제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과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특별행정심판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관련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을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○ 추진경위

- 1985년 행정심판법 제정
- 1995년 국무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확대
-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(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통합)
-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 변경
- 2018년 국선대리인제도 도입
- 특별행정심판기관 운영현황 서면·방문 조사('22.9~'22.10)
-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위한 정책연구용역('22.9~'22.12)

-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 보완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('23.2)
- 특별행정심판 통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('23.3)
- 행정심판 통합 기획단 출범('23.6.)
 - ※ 「행정심판 통합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정 및 시행
- 특별행정심판 기관 운영현황 조사·분석('23.7.~10.)
 - ※ 행정심판 통합안 마련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의 법적 근거, 특성조사 등
- 행정심판 관련 국민불편 사례 분석 및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('23.8.)
-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구성 및 자문('23.10.), 행정심판 통합 학술대회 개최('23.11.)
-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사전의견 조회('23.12.~)

6. 주요내용

- 총사업비 : 해당없음
- 사업기간 : 단년도 계속
- 사업규모 : 1,177백만원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국민권익위원회
- 사업 수혜자 :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7. 사업 집행절차

